2018년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제7차 정기총회

일시: 2018. 2. 21.(목) 오후 5시

장소 : 호서대 아산캠퍼스 강석규교육관 5층 513호



목차

| 제7차 정기총회 |
|--|
| ● 식 |
| · 총회사 9 |
| • 경과보고 ···································· |
| 제① 호 안건 : 전차회의록 보고 및 심의 ■ 제6차 정기총회 회의록 ·································· |
| 제②호 안건 : 2017년 감사보고 승인 |
| • 2017년 감사보고서 ········· 21 |
| |
| 제③호 안건: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 |
| 2017년 사업보고 |
| |
| 제④호 안건: 정관 변경안 심의 |
| • 정관 변경 건 ······ 67 |
| 제5호 안건 : 임원 선출의 건 ● 이사(이사장) 및 감사 선출 |
| 제⑥호 안건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 • 2018년 사업계획안(법인, 위탁사업) ·············· 77 |
| • 2018년 예산안 95 |
| 제 7호 안건 : 기타 안건 |
| 기 타 |
| • 공로패 수여 ······ 107 |
| • 우수위탁사업 표칭(사회적기업 협동조합통합지원, 마을기업지원) ···108 |
| 부록 |
| ● 정관 및 각종 운영내규 ···································· |
| 회원명단 및 회원가입 안내 ··································· |
| |

제7차 정기총회

2018년 총회준비위원회

식 순

| 구분 | 시간 | | 내용 | | |
|------|-------------|----------------|-----------------------------|--|--|
| 등록 | 16:00~17:00 | 등록 및 접수 | | | |
| | | 총회준 | 총회준비위원회 경과보고 | | |
| | | 성원되 | 보고 및 개회선언 | | |
| | | 의사일 | 일정 확정(회순채택) | | |
| | | 의사록 | 록서기 및 서명날인인 지명 | | |
| | | | 안건1. 전차회의록 보고 및 심의 | | |
| 1부 | 1700 1000 | | 안건2. 감사보고서 승인 | | |
| 정기총회 | 17:00~18:00 | | 안건3. 17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 | | |
| | | 안건 심의 | 안건4. 정관 변경 심의 | | |
| | | | 안건5. 임원선출(이사장, 이사, 감사) | | |
| | | | 안건6. 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 | |
| | | | 안건7. 기타 안건 | | |
| | | 광고 | 광고 및 폐회선언(기념촬영) | | |
| | 18:00~18:30 | 등록 및 접수 / 포토타임 | | | |
| | | 개식선 | 선언 | | |
| | | 퇴임 | 이사장 인사 및 신임 이사장 인사 | | |
| 2부 | | 활동 영상 상영 | | | |
| 기념식 | 18:30~19:00 | 내빈소개 | | | |
| | | 공로패 증정 | | | |
| | | 퇴임 | 임원진 인사 및 신임 임원진 인사 | | |
| | | 단체 | 사진촬영 | | |
| | 19:00~20:30 | 회원 | 교류회 : 저녁식사 | | |

2018년 총회를 준비하며…

안녕하십니까?

사회의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풍향계도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한 번 더 발전을 위해 꿈틀대고 있는 이 때, 항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충남에서 사회적경제로 사람과 지역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온 (사)충남 사회경제네트워크가 지난 6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갈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2012년 1월 19일. 연대와 협력, 순환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 고,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꿈꾸며 '사회적경제'에 뜻을 모았던 신 생조직이 현재의 25명의 조직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한결같은 회원님들의 관심 과 정성, 참여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간 6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지만, 충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통합지원기관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많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차츰차츰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자평도, 지역사회내 호평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조직과 사업, 재정의 속속을 살펴보며 좀 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지역과 공생하며 사람과 사회를 살피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합니다. 본회가 거듭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2월 21일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윤기

2018년 총회 추진경과 서면보고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 No | 구 | 분 | 이름 | 직책 | 소속 | 비고 |
|----|----|----|-----|-----|------------------------|--------|
| 1 | 위원 | 실장 | 최재권 | 이사 | 나사렛대학교 생활관 | 미래발전위원 |
| 2 | 위 | 원 | 박노진 | 이사 | 숟가락 밥상 마실 | 선거관리위원 |
| 3 | 위 | 원 | 강종건 | 이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미래발전위원 |
| 4 | 위 | 원 | 김의수 | 감사 | (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 선거관리위원 |
| 5 | 위 | 원 | 이혁수 | 센터장 | 마을기업지원지원센터 | 미래발전위원 |
| 6 | 위 | 원 | 권용옥 | 센터장 | 협동조합지원센터 | |
| 7 | 위 | 원 | 박정현 | 실 장 | 마을기업지원지원센터 | 미래발전위원 |
| 8 | 위 | 원 | 장인선 | 팀 장 | 협동조합지원센터 | |
| 9 | 위 | 원 | 박용원 | 팀 장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 |
| 10 | 위 | 원 | 장은희 | 팀 장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 미래발전위원 |

■ 2018년 총회 추진경과 보고

| 일정 | 주요내용 | 비고 |
|---------------|---|-----|
| 17. 12.28.(목) | ○ 제33차 이사회 개최 - 2018년 제7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준비위원(장) 선임 | |
| 18. 1. 8.(월) | ○ 제1차 총회준비위원회 개최 - 총회 일정 논의 및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 |
| 18. 1.15.(월) | ○ 제2차 총회준비위원회 개최 - 정기 총회 계획안 논의 및 이사 추천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
| 18. 1.24.(수) | ○ 제3차 총회준비위원회 개최 - 충사넷 규정 제(개)정 및 법인 역할과 기능 논의 | 미발위 |
| 18. 1.30.(화) | ○ 제4차 총회준비위원회 개최 - 법인 평가 및 조직 구성(안) 논의 | 미발위 |
| 18. 2.12.(월) | ○ 제5차 총회준비위원회 개최 - 총회 준비 사항 점검 | |

■ 보고 및 제안

- O 법인 평가
- O 법인 사무처 강화 및 위원회 (자문회 및 후원회) 활성화 제안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내'리서치 랩' 신규 팀 설립 제안

전차회의록 보고 및 심의

2018년 총회준비위원회

주문사항

다음과 같이 제6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오니 숭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회의록 보고 및 심의

III 제6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 2017년 2월 23일(목) 17:00~19:10

○ 장소 : 호서대학교 국제회의장 203호

O 참석자 : 총회원 131명 중 86명 참석(출석 27, 위임 59)

O 심의안건

제1호 의안. 2016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

제2호 의안. 정관변경 건

제3호 의안. 이사 및 감사 인준의 건

제4호 의안.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제5호 의안. 기타안건

○ 제 1부 〈정기총회〉

의장 : 이윤기 이사장

- 성원보고(정승윤 센터장)
 - · 총회원 131명 중 86명 참석(출석 27, 위임 59)
- 개회선언(의장: 이윤기 이사장) 17시 15분
- 회의록 서기 및 기명날인인 선임(의장)
 - 서기(장인선 회원) 및 기명날인인(박춘섭 회원) 지명선임
 - 동의(박미란 회원) 재청(박용원 회원) 이의없음 가결
- 회순채택
 - 동의(전성화 회원) 재청(박미란 회원) 이의없음 가결

- 총회준비 경과보고(총회준비위원장 최선희 공동대표)
 - 제출된 자료집에 근거하여 경과 보고
- 전차회의록 보고(서면보고)
 - 동의(박찬무 회원) 재청(윤봉환 회원) 이의없음 원안승인
- 2016년 감사보고(김의수 감사)
 - 동의(백세기 회원) 재청(박찬무 회원) 이의없음 가결
- 제1호의안. 2016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
 - 제출된 자료집에 근거하여 설명(정승윤 센터장)
 - 동의(신재학 회원) 재청(강종건 회원) 이의없음 원안승인
- 제2호의 안. 정관변경 건
 - 제출된 자료집에 근거하여 설명(정승윤 센터장)
 - 신재학 회원이 지난해 조직변경을 했는데 일년만에 다시 조직변경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
 - · 정승윤 센터장이 작년의 경우 이사회를 축소하고 운영위원회를 확대 하려고 했으나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지 못함으로 의결단위가 약화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올해는 실무자가 결합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 고 이사회도 년2회에서 년4회로 늘려 의결권을 강화하려고 함. 사무 처는 그동안 사무국으로 되어있음에도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을 써 왔 음. 사무처로 직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함을 설명.
 - · 동의(김기배 회원, 오창석 회원) 재청(권용옥 회원) 이의없음 원안승인
- 제3호의 안. 이사 및 감사 인준의 건
 - 이사 후보 : 김기배, 최재권, 박노진, 강종건, 백세기, 김금순
 - 감사 후보 : 이시헌

- 동의(박춘섭 회원) 재청(박미란 회원) 이의없음 가결
- 제4호의 안.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 제출된 자료집에 근거하여 총괄보고 및 사무국 제안설명(정승윤 센터 장)
 - · 제출된 자료집에 근거하여 각 센터별 사업계획 제안설명(박용원 팀장, 장은희 팀장 직무대행, 이혁수 센터장, 권용옥 센터장, 윤봉환 센터장)
 - 제출된 자료집에 근거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정승윤 센터장)
 - · 최선희 공동대표가 사무국의 보조금 수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길 주문
 - · 정승윤 센터장이 사무국의 보조금 수입은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 운영기관 수입임을 설명
 - 전성환 회원이 예산의 수입처에 대해 질문
 - · 정승윤 센터장이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사업은은 도비, 그 외는 국비가 대분임을 설명, 사무처는 회비로 운영됨을 설명
 - 동의(전성환 회원) 재청(강종건 회원) 이의없음 가결
- 제5호의 안, 기타안건 부의 : 없음
- 회의록 채택

기명 날인인이 작성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차기 이사회 보고(위임) 동의(장동순 회원) - 재청(김종수 회원) - 이의없음 - 가결

- 폐회선언(의장) : 18시 6분 폐회
 - 제2부(축하마당)

사회 : 권용옥 협동조합지원센터장

- 문화공연 : 충남 문화예술원
- 환영사: 이윤기 이사장
- 격려사 호서대학교 링크사업단장 이진우
- 축사
 - 청년대표 정명진 청년활동가
 - 다문화가족대표 민가희 무지개식탁
 - 자활 대표 남명현
 -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이봉재 팀장
- 2016년 활동영상
- 올해의 모범회원상
 - · 나눔과 협동상(김기배 회원, 정진오 회원)
 - · 사회혁신상(박상우 회원)
-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전달식 : 신재학 회원
- 신임 상임이사 및 신임 임원진 인사
- 신임 사무처장 인사
- 정기총회 종료 : 19시 10분

서 기 장인선 (서명 !

기명날인인 박춘섭 저명 또는 날인)

2017년 감사보고 승인

감사 김의수 · 이시헌

주문사항

다음과 같이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7년 감사보고서

| 감사일시 | ○ 2018. 02. 09 |
|------|---|
| 감사장소 | O 법인 사무실(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벤처밸리 203호) |
| 감사방법 | O 서면감사, 대면감사 |
| 감사범위 | ○ 2017. 01. 01. ~ 2017. 12. 31. 사업 및 회계 부문 일체 |

1. 본 감사보고서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가 작성한 2017년 사업 감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주요활동에 대한 유효성과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2017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와 사업에 대해 개괄적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본회의 정관과 일반적인 금전출납 및 장부기장 원칙,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를 대조 확인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사업 및 주요활동 부문

- 2017년 사업 감사는 지난 6차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과 사무처에서 제출한 2017년 사업 감사자료(법인사업 및 위탁사업 부분)를 서면 검토한 후 마을기업지원센터 이혁수 센터장, 협동조합지원센터 장인선 팀장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주요활동의 추진성과, 운영주체들의 활동방식 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법인의 주요 활동인 부처별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사업과 지역혁신인 재 발굴·육성을 위한 충남 사회적 경제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처별 위탁사업은 사업 수행 6년차를 맞아 전문화안정화되어 과업의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진일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기관에서 실 시한 전국 평가에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 사업(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전국 1등, 마을기업 지원기관(행정안전부)은 우수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2016년 본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道시책사업인 사회적 경제 청년활동 가 지원 사업은 시행 첫 해부터 성과와 필요성을 인정받아 2017년도 에는 전년에 비해 6명이 더 증원되어 총 16명의 지역혁신인재 발굴·확 장에 기여하였습니다.
- 전년도는 센터별 독립을 목표로 위탁사업별로 전문성,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2017년 사회적 경제 정책 환경의 변화에따라 다시 통합지원 방향으로 다시 선회한 한해였습니다.
- 그간 센터(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오던 방식을 다시 통합하기 위해 법인 인력을 보강하고, 센터(팀)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내다양한 회의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무책임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혼란으로 사무처 고유 업무에 공백이 생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센터(팀)장이 업무를 분담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통제가 어려워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지난 한해 법인 고유 목적 사업을 정립하고 재정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며, 앞으로 보완 해야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회계 및 재정 부문

-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소속 마을기업지원센터 이혁수 센터 장, 협동조합지원센터 장인선 팀장, 사무국 권아랑 간사에게 회계감사 와 관련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각 부문의 회계감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을 아래에 제시합니다.
-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살펴 본 결과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현주소지로 변경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상 임원의 변경등기 등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 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먼저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6년까지 회계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2016년 12월 31일자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는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계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8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상 보통예금의 잔액 223,955,470원은 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31일 시점에 사업비 반납 예정 금액92,547,774원을 차감하면 실질적인 보통예금 잔액은 131,407,696원으로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회계는 내부 및 외부정보이용자가 합리적 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 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 보면 비용 계정과목 중 '운영비'와 비슷한 계정과목이 목적사업비 (용역)에서도 중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명확히 구분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 도록 계정과목 명칭을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통예금명세서상 강의외래수입 반납계좌 및 일비 반납계좌와 관련한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두상 및 암묵적으로 규정을 관리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반납과 관련한 규정 뿐만 아니라 기타 규정도 필요하다면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무상태표상 예수금 잔액을 살펴본 결과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가 누적되어 계상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금은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만 표시하여 야 할 것입니다.
-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을 살펴본 결과 계정과목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보통주 등의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주'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손익계산서상 회비수입과 후원금수입은 순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비수입과 후원금수입은 총액으로 표시를 하고 이 와 관련한 수수료 등은 비용 계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손익계산서상 운영비(법인) 중 잡비(법인)의 금액이 '-(음수)'로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에 표시되는 금액은 '-(음수)'가 아닌 '+(양수)'의 형태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 손익계산서상 시군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한 수입은 2018년도 초에 집행이 되었고, 지출은 2017년도 말에 집행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에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수익과 비용이 같이 표시되어야 경영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 집행의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4. 2017년 한 해 동안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알찬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윤기 이사장님과 이사회, 사무처, 활동가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 02. 09

사업감사 김의수 (서명 보안) 회계감사 이시헌 (서명 보이)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

2018년 총회준비위원회

주문사항

다음과 같이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제출하오니 숭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사업보고

1

기본현황

🔲 단체개요

| 단체 명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영 문 명 | Chungnam Social Economy Network | | | | |
|---------------|--|--|--|--|--|--|--|
| 설립년도 | 2012년 1월 19일 | 대표자명 | 이 윤 기, 최 선 희 | | | | |
| 단체성격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 사 업 자 등록번호 | 312-82-16376 | | | | |
| 설립목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 마을만들기 등 풀뿌리 주민조직의 발굴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공익적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 | | | |
| 소 재 지 | ⑨31538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대학교 호서 벤처밸리 203호 | | | | | | |
| 대표전화 | 041-415-2012 F A X 041-415-2013 | | | | | | |
| 대표메일 | sechungnam@gmail.com | echungnam@gmail.com 홈페이지 www.sechungnam.org | | | | | |
| 블 로 그 | blog.naver.com/sechungnam | blog.naver.com/sechungnam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chungnam | | | |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201 | [2년 3월 ~ 현 | · 현재 | | | | |
| 인력현황 | 등록회원 : 113명 / 임원수(이 | 사감사) : 9명 | / 직원수(활동가) : 25명 | | | | |
| 부설기관 (4) | 충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충남마을기업지원센터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 | | | | | |
| 가입연대조직 (9) | 사회적기업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충남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등 | | | | | | |
| 협력기관 (111) | | | 제진흥원), 産(롯데백화점), 學 남지역언론연합) 등 MOU체결 | | | | |

■ 주요연혁

- 2010 ~ 2011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준비모임 구성, 사회적경제 워킹그룹 운영
- 2012년
- 01.19.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창립총회(이사장 전성환, 사무처장 최선희) 02.28. 사단법인 설립 허가(충청남도 제2012-1호)
- 03.02. 법인설립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업자등록(천안세무서)
- 2013년
- 01.28. 사무실 이전(천안시 쌍용동, 나사렛대학교 랏드리지2관)
- 02.28. 사업자등록 변경(면세법인사업자)
- 03.28. 제2차 정기총회(이사장 보선 이윤기, 사무처장 박상우)
- 08.01. 충남 서북부권 분사무소 개소(홍성군,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2014년
- 01.29. 사무실 이전(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9130호)
- 02.03. 대표자 변경신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등기과, 천안세무서)
- 03.27. 제3차 정기총회
- 06.18.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전문기관 등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7.14. 「충남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발족(공동대표 허승욱이상산이윤기)
- 10.1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사회적경제연대회의 | 발족(상임대표 이유기)
- 10.23. 제1차 임시총회(정관 개정, 온오프라인 회원투표)
- 12.3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행정자치부)
- 2015년

주요연혁

- 01.26.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기관 지정(보건복지부아산시)
- 02.27. 제4차 정기총회
- 06.23.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 발족(상임대표 이윤기)
- 2016년
- 02.05 2016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운영기관(충청남도)
- 03.14. 제5차 정기총회
- 06.01. 사회적경제 혁신리더 및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 수임
- 08.08 내포 사무소 개소
- 12.02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이전
- 2013~2016 충남협동조합현장지원센터 운영기관 수임(충청남도)
- 2017년
- 02.23. 제6차 정기총회
- 2012~現在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운영기관 수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3~現在 협동조합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수임(기재부, 대전충남북 컨소시움) 2013~現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 수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現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수임(고용부기재부진흥원) 2012~現在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수임(행안부충청남도) 2016~2017 충남사회적경제청년활동가 지원사업운영기관 수임(충청남도) 05. ~現在 사회적경제공공구매지원기관 수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0.01~12.19 공주시 사회적경제 컨설팅지원용역 사업(공주시청) 11.30~12.30 아산시 사회적경제 시민역량강화 교육(아산시청)

■ 미션과 비전 · 목표

비전/미션

❖ 협동과 연대, 순환과 공생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창조

-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한다.
- > 호혜와 협동에 기반한 중남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 > 지역화(localization)를 위해 돕고 거드는 건강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나아간다.

가치

❖ 사람, 노동, 지역, 호혜, 협동, 참여, 자치, 혁신, 공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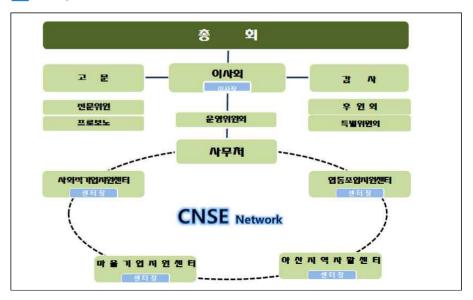
목표

- ❖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지역화(Localization)
 - ▶ 지역에 기반한 1000개의 건강한 품뿌리기업의 발굴과 지속가능성 확장
- 사회적경제 주류화를 통한 품뿌리자치 확산과 지역 블럭화

과 제

- > 주민참여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자기혁신과 독자적인 운영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기책임과 혁신,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충남 사회적경제 활동주체 및 민간 자조역량 강화
- > 사회적경제 당론 및 대중화를 위한 홍보 감화
- 나눔과 협동의 지역혁신 사례 발굴과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 창출
- 사회적경제의 자주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와 협력 확장

조직도



■ 사무처 기구 및 정원

2018년 1월 1일 기준

| 법인 | 사무처 | 사회적기 | 기업센터 | 마을 | 을기업 | 지원센터 | 협등 | 동조합 | 지원센터 | 아산 지역 | 자활센터 |
|------------|-----|------|------|----|-----|------|----|-----|------|-------|------|
| | (1) | (| 7) | | (| 4) | | (| 3) | (9 | 9) |
| 사무처 직 대 | - | 센터장 | - | 센터 | 터장 | 이혁수 | 센E | 터장 | 권용옥 | 센터장 | 윤봉환 |
| 간 사 | 권아랑 | 팀 장 | 박용원 | 실 | 장 | 박정현 | 팀 | 장 | 장인선 | 실 장 | 최현아 |
| 간 사 | - | 팀 원 | 박미란 | 텀 | 원 | 김지영 | 텀 | 원 | 강지원 | 팀 장 | 이은영 |
| | | 팀 원 | 최승호 | 팀 | 원 | 이종민 | | | | 팀 장 | 송지웅 |
| | | 팀 원 | 오명래 | 팀 | 원 | 황은하 | | | | 팀 장 | 오은실 |
| | | 팀 장 | 장은희 | | | | | | | 사 원 | 허은주 |
| | | 팀원 | 최인묵 | | | | | | | 사 원 | 강수연 |
| | | 팀원 | 이정오 | | | | | | | 사 원 | 황가영 |
| | | | | | | | | | | 사 원 | 양은영 |

■ 주요임원 현황

□ 이 사 장 이윤기(성공회 신부, 쌍용중합사회복지관장), 최선회(전 아산 풀푸리 여성연대 대표)
□ 감 사 김의수((사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 이사장 이시헌(세무사이시헌사무소)
□ 이 사 전성환(전 충남문화산업진홍원장) 최재권(나사렛대학교 생활관 관장)
김기배(노부법인벽성) 박노진(숟가락밥상 마실 대표)
강종권(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김금순(백석을미대표)
백세기(서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대표)
□ 고 문 박진도(지역재단 이사장) 이상선(충남시민재단 이사장)

활동보고

■ 2017년 주요사업 보고

1 법인 사무국

❖ 2017년 사업

활동방향

- 정치 지형의 변화와 중간지원 조직의 분화 발전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려한다.
- 안정적인 고용환경의 구축과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 한 조직을 구축한다.
- 사회경제 제단체와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변화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다.
- 각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고유 목 적 사업을 병행한다.
- 각 센터의 자력적 운영과 실무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에 집중한다.

활동목표

-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회원 증모 활동과 후원금 확대
- 시군 단위별 사회경제 조직과 공동 협업 작업 강화
- 센터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통합적 조정 역할 강화
- 센터별 경영지원을 위한 사무국의 업무 역량 강화
- 청년활동가 등 지역인재 발굴 육성 및 기초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 의제 발굴과 정책제안, 법제도 개선

사업과제

■ 회원사업

- 회원관리 및 기본서비스 매뉴얼화: 땡큐 메일, 뉴스레터 발송
- 일상적인 회원 증모운동 진행: 회원 126명(회비 납부 기준)
- 특별 후원금 모금 운동 진행
- 조직사업

- 조직 개편을 통한 내부 혁신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추진 중
- 회의체계 정립과 안정화 추진, 실무자와 임원간의 소통강화

■ 센터지원

- 충사넷의 미션과 비전의 지속적인 공유작업 진행
- 법인과 센터간, 센터와 센터간 연대와 협력 강화
- 행정 및 기타 업무지원 : 경영지원, 업무협약 등

■ 홍보 및 정보공유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일간지, 주간지, SNS망 확대
- 인명DB 관리 및 사회적경제 e-마케팅
- 연구 및 정책제안
- 각종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 집담회, 토론회 등
- 지역사회 실태 및 연구조사사업
- 시책분석 및 정책제안 : 법제도 개선 활동
- 발굴 및 역량강화
 -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내 외부 실무자 교육 매칭
 - 지역혁신인재 발굴 . 육성: 17년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수임
 -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 공주, 아산 사경조직 발굴 용역 수임
- 교류 및 연대협력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민관협치 : 거버넌스 : 각종 공공기관 위원회 참여 등
 -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법인_활동총평

□ 센터별 전문 분화 방향에서 사회적경제 지형 변화에 따라 통합 지원 방향으로 선회

- 연초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운영위원회(센터장 회의)운영, 팀장이상회의를 운영하면서 센터별 협력사업 모색함.
-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도내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협의회 등과 다양한 시책 사업 연대활동 등을 위해 대민 홍보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효율적 공고화를 위해 노력함.

□ 사업 추진 단위를 법인과 센터 이원체계로 추진

- 법인의 지속성과 활동성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와 사무처장을 두고 각 센터의 회계, 총무 등 실무지원 형태로 운영
- 사무처장 퇴사 이후 위임사무 대상 주체의 불명확성과 업무과중에 따른 위탁 사업조율 미흡 등으로 전반적인 사무처 관리 운영의 어려움. 사무처 안정적인 기능과 역할 정립의 중요성 인식
- : 회원 관리 사업 부실, 사회적경제 연대 공제기금 등 사업계획상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또한, 정관 등 규정에 따른 회의체계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확장된 청년활동가 지원 위탁사업 2년차 추진

- 참여 기업 및 청년 발굴의 애로와 사업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시스템의 불안정 상태에서 착수하였으나 2016년 10명에서 2017년 16명으로 증원된 청년 활동가 지원 사업운영으로 청년 발굴 확장에 노력함.
- 사업책임자 변경에 따른 일관된 사업방향에 따른 추진 어려움과 실무 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청년활동가 참여자에 대한 밀착 지원과 관리의 한계 인식

□ 6년차를 맞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기관 위탁사업

- 누적된 사업 추진 노하우에 따른 위탁사업의 안정화와 전문화에 따른 전국 지원기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사업 최우수, 마을기업지 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이는 충남도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및 당사자 의 협조와 응원도 주요했지만 무엇보다 상근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함.
- 위탁사업을 통합적 운영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원 시너지는

약함. 센터별 자율성과 센터 고유 과업의 전문화를 기반으로 한 운영은 좋으나 각 센터의 사업방향을 통합적으로 집중시키고, 전체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했음. 이는 사무처가 각 센터를 통제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1 사회적기업 권역별(충남) 통합지원기관 운영

예비 사회적기업 설립에 대한 상담부터 인증 및 경영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기관 위탁사업

- O 인증 및 인증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수 : 총 12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서해키조개영어조합, 아산로컬푸드협동조합, 주식회사 명풍시스템, 협동조합 고랑이랑, 명학장학회, 대원지앤지, 한마 음장애인복지회, 마이소사이어티, 새날,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 청양로컬 푸드협동조합
- O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수 : 총 10개소
 - 벽산컴퓨터리싸이클, 주식회사 브레인, 주식회사 천안낭만극장, 농업회 사법인 계룡산채, 상록수농산영농조합, 부여마을문화학교협동조합, 주식 회사 클린환경센터
- O 고용노동부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수 : 총 7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다물, 주식회사 봄누리, 그린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라온 누리, 이맛이야협동조합, 백제에서놀자, 혜안
- O 재정지원사업 심사지원
 - 1) 전문인력 지원사업 : 총 41개소
 - 2) 일자리창출사업 : 총 48개소
 -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총 52개소
 - 전문인력 공모 : 상시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 공모: 2월, 7월

- O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 1) 간담회, 워크숍 등 추진

- 간담회 개최 : 총 16회

- 토론회 개최 : 총 3회

2) 협의체, 네트워킹 행사 추진 : 총 7회

■ 위메프-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사업 논의, 대학·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상생 협력 방안 논의, 충남지식재산센터 고도화 지원 논의, UNISTRY분야 별 컨설팅 논의, 다문화 식음료 관련 사회적기업 연계 방안 논의, 공동 주택 직거래 장터 개설 관련 협업 논의, 사회적기업 소비 확산을 위한캠페인 논의, 청년정책 로드맵 제안 및 분야별 토론, 유관기관 사회적기업 업 육성 추진 방향 논의, 충남 지역문제 해결 협력 사업 논의 등

O 교육

- 1) 인증제도 및 요건 설명회 : 총 18회
 - 월요 설명회 사회적기업 뭔데이(MONDAY)?, 지역순회 설명회 알콩달콩 (사회적기업을 알아가고 도달하는)설명회 등
- 2) 일반인 대상 교육 : 총 19회
 - 법인설립부터 사회적기업까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례 교육,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매담당자 교육, 청년CEO사회적경 제 창업 교육, 충남도 사회적기업 담당자 교육 등
- 3)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교육 : 총 18회
 - 사업계획서 작성&자금조달 전략, 세무회계 아카데미,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실전교육, 분야별 맞춤형 아카데미(갈등관리, 영업전략, 사회적가치, 사업계획서) 등

O 역량강화

- 지원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평균 80시간
 - 사회적기업가 강사양성 과정,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과정,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업계획서, 사업 분석, 지역수요 발굴 등

O 현장지원

-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적 : 총 161건
- 재정지원사업 컨설팅, 찾아가는 인증 컨설팅 등

2 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코칭)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사·회계·법무 분야의 경영 코칭 (Coaching)을 제공하여 기본시스템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 선배 사회적 기업가들의 현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동종업종의 네트워킹 지원

- 2017년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매칭
- 참여기업 : 총 13개소
 - ㈜이든밥상, ㈜만찬,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주식회사 컴퍼니나우, ㈜이은아공방구슬땀, ㈜브레인, 농업회사법인 계룡산채, 부여마을문화학교협동조합, 주식회사 천안낭만극장, 주식회사 클린환경센터, 벽산컴퓨터 리사이클, 주항리봉하마을영농조합법인,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 컨설턴트 : 총 14명
 - 인사노무 : 김민호(노무법인 참터), 김기배(노무법인 벽성)
 - 회계세무 : 정진오(세무사), 이시헌(세무사), 최완규(세무사), 김성창(가율 회계법인 홍성지점), 고범석(세무사)
 - 멘 토 형 : 안종성((주)깔끄미하우스), 임종순((주)프라미스온), 최영준((주) 나눔커뮤니케이션), 장금용(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위원),김은상(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 전문위원), 배철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위원), 신원 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위원)

3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전문상담기관 사업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역간 지원체계 확립

- 7월 진흥원과 위탁 계약 후 사업 추진
 - 공공구매 대상 기관 유형별 방문활동 : 총 345건

| 국가 기관 | 자치단체 (광역/기초) | 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 기관 | 기타 공공기관 | 지방 공기업 | 특별 법인 |
|--------------|-----------------|-----|-----|-----------|------------|-----------|----------|
| 4 | 104/148 | 10 | 95 | 3 | 52 | 1 | - |

- 공공구매 대상 기관 교육(설명회 포함) : 총 8건
 - 도로공사 충남본부, 호서대학교, 천안시, 충남도청, 한국수력원자력, 중 부산림청, 충청권 국공립대학, 세종시청 등
- 전문위원 활동 : 총 37건(권도원, 장금용 2인 전문위원 위촉)
 - 서천군청, 세종특별시 교육청, 한국중부발전, 충남교육연수원, 대전시청, 한국서부발전, 화성시사회적기업협의회, 천안시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교육청, 충남개발공사, 홍성군청, 천안세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보령시청, 충남테크노파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등

4 협동조합 권역별(충남) 통합지원기관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인가지원, 협동조합의 홍보,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협동조합간 연대 및 협력지원, 청년 start up지원, 등 상담부터 설립·인가 및 경영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기관 위탁사업(기획재정부)

-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인가 지원
 - 일반현황: 협동조합 설립 74개소,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3개소
- 상담 및 교육지원 : 협동조합 설립 및 인식개선 교육 52건(152시 간, 420명)
- 우수사례발굴 12개소(전국 2017년 우수사례 선정 2건_ 송악동네사회적협동조합,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 청년창업협동조합지원: 나다운사회적협동조합(인가중, 청년협동조 합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천안청년들협동조합(허가)
- O 협동조합 운영상담 및 현장지원
- 수요 맞춤형 상담, 교육 지원 (상담 177건, 교육 40회, 159시간)
- 주 내용: 세무회계 집중교육(1차_보드게임으로 보는 회계, 2차 실 무중심 신협회계프로그램 운영, 3차_ 회계동아리운영)
- 모니터링 요구분석을 통한 현장지원
- :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120개소, 사회적협동조합 전수19개소, 협동조합 101개소)
- 제도개선 과제 제안: 4건
- O 네트워크 자원 연계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지원(2017년 12월 설립 총회)
- 협동조합 판로지원
- : 공동판촉행사 현장판매전 매출성과 7.240만원
- : 공공구매 연계, 아이쿰입점(수피아협동조합),충남개발공사 납품, 온라인판매, 전문가 연계 품평회등
- 외부 자원 연계활동
- : 충남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 수립 연대활동

: 학교협동조합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홍보

- 자체 홍보: 월 평균 30건
- 우수사례발굴 및 현장 취재: 12개소
 - 충남협동조합 밴드 431명, 페이스북 팔로워 645명, 블로그 조회수 월평 균 3572건, 뉴스레터 구독자 5814명
 - 아웃바운드 홍보매체 활용(67건) : 웹진, 간행물 등 제작 · 발송
 - 언론보도(15건)
- O 지원기관 역량강화
 - 실무자 교육(관내·관외)
 - 관내교육 : ①'봤슈' 책모임② 실무자 라오스여행
 - 관외교육 : ①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 과정 수료②권역별 통합지원기 관 교육 수료

5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권역별(충남) 지원기관 운영

(지역)사회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위탁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인큐베이팅(7기, 20팀)

- 담임 멘토링 : 매월 1회 이상 대면 멘토링(총 160회) 등

- 전문 멘토링 : 각 팀 3회, 7시간 이상

| 창업팀명 | 아이템 | 지역 | 창업팀명 | 아이템 | 지역 |
|----------------------|--------------------------|----|----------------|----------------------------------|----|
| 그로우업 | 놀이 프로그램 개발 | 당진 | 에어스트림투유 | 에어스트림을 활용한 창업 인 큐베이팅 | 태안 |
| 글로벌쿡방 | 다문화 식당 | 아산 | 오감 | 발달장애 경계 부모를 위한 어플 | 보령 |
| 담뿍 | 마을까페 + 환경 생태교육 | 아산 | 소나기커뮤니케이 션 | 휴먼 다큐멘터리 제작 및 플 립러닝 | 아산 |
| 동네형아 | 사람책, 삼식세끼 시골체험 | 부여 | 촌스럽 | 지역 공공 미술 디자인 및 교 육 | 부여 |
| 로컬스토리 | 지역 미디어 | 홍성 | 컬쳐플러스 | 예술 공연 기획 및 교육 | 천안 |
| 마치네코 | 고양이 책방 분홍코 | 천안 | 쉐어앤쉐어 | 카풀앱 "카풀로" | 천안 |
| 복합문화공간 연 하다여관 | 게스트 하우스 | 금산 | 코끼리별꽃 | 업사이클링 디자인 및 제작, 환경교육 | 천안 |
| 아르크프로젝트 | 발달 장애인의 그림 활용한 에코백 | 천안 | 둥구나무 | 교육 농장 | 예산 |
| 안전한 데이트를 위한 데이트학교 | 데이트 폭력 상담 및 예방을 위한 교육 | 아산 | 한다리 | 전통 혼례 및 예절 교육 | 서산 |
| 찬고을 | 로컬 재료를 활용한 반찬 | 청양 | 해피맘협동조합 깜냥소 | 까페 산새 운영 | 천안 |

- 의무 교육 : 25시간 이상

■ 회계행정 매뉴얼 교육, 브랜딩 교육, 선배 창업가와의 만남 교육, 사회 적기업가의 리더쉽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 공익 마케팅 등

- 네트워크 구축 : 사회혁신가 펠로우쉽 구축을 위한 펠로우쉽 데이 진행 (12월 23일)

○ 사후관리 : 전기 창업팀 사후관리(5개팀)

6 마을기업 권역별(충남) 지원기관 운영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부터 마을기업 발굴 및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기관 위탁사업(행정안전부)

- O 마을기업(신규·2차 및 예비마을기업) 선정 심사 및 행정 지원
 - 마을기업 선정 : 14개소 선정(신규 12개, 재지정 2개)
- 예비마을기업 선정 : 10개소 선정
- 마을기업 시도심사 : 총 3건(2017년, 2018년 마을기업, 2017년 예비 마을기업 선정 심사)

O 컨설팅

- 컨설팅(현장방문, 전화온라인) : 총 338건
- 제품 및 포장 디자인, 제품 아이템 개발 : 총 113건

Ο 교육

- 설립전 교육 : 11회(입문 8회, 기본 2회, 심화 1회 ; 총 57시간)
- 당사자 교육(비즈니스 및 경영일반) : 총 13회(총 59시간)
- 일반교육(자체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 : 총 20건(56시간)

O 판로지원

- 신규 판매망 개발(기업, 대형마트 등 납품유통 지원) : 총 482건
 - 따숨몰, 유통형마을기업(위드충남), 도로공사, 충남개발공사, 청양교육청, 행안부 등 공공기관 제품 판로 매칭 등
- 온라인, SNS 홍보·마케팅 지원 : 총 121건
 - 마을기업제품 체험단, 마을기업 공동브랜드(마을기업선물세트) 개발, 현 판제작지원, 전시판매용 툴킷박스배포 등
- 직거래장터 운영(자체 기획사업 판로지원) : 총 7건(36개소 참여)
 - 자선 홍보/판매전 : 나눔축제한마당, 삼성디스플레이 행복한 나눔장터
 -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 마을기업 전국 박람회, 광역자활한마당, 서천도 농교륙한마당
 - 기획특판 : 설기획전, 추석기획전

7 충남아산지역자활센터 위탁기관 운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 공해 자립의지와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보건복지부)

1. 고유사업

| 사업현황 | | 참여인원 | 활동내역 | | |
|--------------|---------|---------------------------------|--|--|--|
| | 외식 | 11명 | - 자격증 취득현황 | | |
| | 바리스타 | 12명 | : 자동차운전면허증 2명 | | |
| 자활사업 자활사업 | 작은먹거리 | 12명 | : 정리수납과정 등 민간자격증 27명 | | |
| 시킬시합 | 치밥치킨 | 24명 - 상담 240회 / 홍보 32회 / 교육 88회 | | | |
| | 토탈서비스 | 23명 | - 취업현항 | | |
| | 게이트웨이 | 25명 | : 5명(일반기업4명, 자활기업1명) | | |
| 자산형성 | 내일키움통장 | 16명 | - 자립역량강화 교육 4회 실시 | | |
| 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 47명 | - 상담 180건 진행 | | |
| O.+! | 장애인활동지원 | 이용자64명 | 명/활동보조인50명 - 16년 대비 대상자 | | |
| 바우처 사업 | 노인돌봄서비스 | 이용자52등 | 명/요양보호사24명 (노인20%가사11%장애8%증가) - 상담 및 모니터링 총1,532건 | | |
| 718 | 가사간병서비스 | 이용자10명 | 명/요양보호사7명 (장아)(839, 가사노인(692) 진행 | | |

2. 특화사업

| 사업명 | 사업비 | 비고 |
|--------------------------------------|-------------|----------|
| 온라인영어학습지원사업 | 19,200,000원 | |
| 2017년 자격증취득지원사업 | 225,000원 | |
| 2017년 좋은이웃들행복나눔 안경사업 | 200,000원 | 민간외부위탁사업 |
| 내일을 위한 휴-개인의쉼 | 2,000,000원 | 총9건 선정 |
| 중부재단, 이룸(I)사업 충남의 '어설픈 글쟁이' 사업 선정 | 1,500,000원 | |
| 2017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선정 | - | |
| 「눈빛안과」와 함께하는 눈 종합검진 지원 선정 | -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후원하는 사회복지관 여행지원사업 | 200,000원 | |
| 2017년 좋은이웃들 | 500,0000원 | |

- 3. 대외협력
- O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업무협약 3건
 - 열린문디자인, 협동조합 참좋은사람들, ㈜코리아에코 21
- O 자활정책홍보 및 생산품 판매

| 구분 | 장소 | 활동내역 |
|-----------------------|--------------|------|
| 2017년 자활생산품 이벤트 및 바자회 | 하나로마트방축점 | 1회 |
| 생산품 판매 | 아산로컬푸드협동조합 | 상시 |
| 꿈이든 | 커피위드(인천터미널) | 상시 |
| 행복씨앗 | 종촌종합복지센터(세종) | 상시 |

위탁사업 평가

| 구분 | 평 가 내 용 |
|-----------------------|--|
| 내/외부 협업 및 연대 활동 | ○ 신규 대외 협력 및 연대활동은 위탁사업 관련 설명회, 경영 지원, 교육 사업 등 수행에 있어 대학, 타 지원기관 및 시민사회기관 등과 사업 추진으로 연대 활동을 활발히 추진함. - 사회적경제 생산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등과 연계 활동 및 호서대학교산합협력단, 충남지식재산센터, 나눔축제추진위원단, 충남도교육청, 지역 대기업, 공공기관등과 위탁사업 기본 과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 실현 -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장 및 고도화 기초 토대를 위한 비콥 한국위원회발대인으로 참여등 ○ 기존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 충남광역자활센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세움)등과 정례회의 참여로 네트워크활동 지속함. 단, 지역의 사회적경제영역에서 본회의 규모와 위상에 비해소극적활동으로향후 적극적이고 주도적활동이 요청됨. ○ 본회 3개 센터간 유기적인 협업은 사업별 공통이슈에 대해 제한적으로활동(마을기업x협동조합 연계 설명회, 뉴스레터 및 일부 시책사업에서 표형태의 센터간 협업 추진)하였으나 TF운영등에 있어 센터 내 사업일정등으로 인한 적극적활동 미흡 |
| 신규발굴 사업 성과 | ○ 지역 이슈와 관련한 네트워크 조직 사업 수행등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진입 풀의 확대를 위한 활동 지속 전개함. - 협동조합지원센터 : 설립지원 및 충남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지원 - 공주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컨설팅 용역사업, 공주대 청년학교 연계를 통한 소셜벤처대회 개최,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인큐베이팅 사업 확대 등 - 시니어 창업과정 및 대학연계를 통한 소셜벤처 창업 과정 교육 수행 등사경조직 저변 확대를 위한 발굴 노력 ○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조직 진입에 대한 양적 확산은 정체되는 경향 속에서 마을기업 등 일부 사회적기업 유형들의 신규 진입율이 타 광역지원기관에 비해 양호한 실적 실현하였으나 의도적인(업종별, 사회이슈별) 신규 발굴 유형의 적극적 발굴은 한계점으로 남음. |

| 구분 | 평 가 내 용 |
|--|---|
| | |
| 위탁 사업 운영 고도화 (세부사업 운영 체계의 안정성과 표준화, 전문화 등) | ○ 센터별 위탁사업을 위한 사업의 표준화와 안정화를 위한 개별적 시스템 구축 노력은 했으나 통합적인 사업 모색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의도적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함. 연간 일정 정례화를 통한 예측 가능한 운영시스템 구축(사회적기업, 육성 사업팀)으로 당사자 기업 및 창업팀에 현장의 신뢰도 제고 현장의 만족도, 지원사업의 효율성, 안정성 등에 대한 발주기관 평가 상위 달성(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위탁사업 최우수평가, 마을기업지원사업 우수평가기관 선정) 위탁사업 중 핵심 요구 과업에 대한 집중 사업 전개(마을기업 : 판로 마케팅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 집중, 사회적기업 : 공공구매전문기관 사업, 당사자 인증 전환 안내 및 컨설팅, 협동조합 : 신규 진입 상담 및 현장 설명회 강화 등) |
| 실무역량 강화 | ○ 위탁사업 예산 활용을 통한 센터별 개별적 역량강화 활동 수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위탁사업 과업 해결 능력을 위한 교육 진행함. - 마을기업 : 월 역량강화 도서구입 지원 및 대외 교육 강의 참가 지원, 정례적 워크샵 활동을 통한 위탁사업의 총체적 이해와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의 안목을 높임. - 사회적기업 : 일상적 사회적경제 철학 공유, 현장 케이스 스터디, 타지역지원기관 협력 맞춤형 교육 진행을 통한 시야 확장 및 각종 교육 및 자격증 교육 참여 지원(협동조합코디네이터 취득, 사회적기업가 강사 양성 과정 수료, NGO사회학신 과정) - 협동조합 : 실무분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과정 단계별 이수, 권역별 통합지원지관 학습모임, 내부 독서모임 '봤슈', 라오스여행 기획단 운영 - 육성사업팀 : 실무 활동 내에서 개별 강의안 제작 및 강의 활동 등 |
| 아산지역자 활센터 | ○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장 및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장 활동을 통한 사회경제영역의 활동을 강화하고 전초적인 역할을 수행 아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산시자살예방협의체 실무분과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역네트워크 형성 및 자원발굴을 통한 내실화 있는 자활사례관리 실시 |

| 구분 | 평 가 내 용 |
|----|---|
| | ○ 아산시자활기금을 활용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증(정리수납)과정 |
| | 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45명)의 기회 제공 및 다수의 민간자격증을 취 |
| | 득하게 되는 경로 확보 |
| | ○ 취업의지가 강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자 |
| | 립 지원 |
| |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참여주민의 욕구에 기반 한 외부공모사업 지원 및 |
| | 선정으로 외부자원에 대한 충실한 집행실현 |
| | ○ 실무자들의 역랑강화를 위해 년 40시간 이상의 교육 지원 |
| | ○ 실무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외부공모사업을 통해 "개인의 쉼, 가족여행" |
| | 지원 |

2017년 결산보고



1 2017년 재무상태표

〈회계기간: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원)

| 재무제표 표시명 | 제 4 기 | (기준) | 제 3 기 | (비교) | 비고 |
|-------------------|-------------|-------------|-------------|-------------|---|
| 1. 자 산 | | | | | |
| 1) 유 동 자 산 | | 226,955,470 | | 116,549,145 | |
| (1) 당 좌 자 산 | | 226,955,470 | | 116,549,145 | |
| 보통예금 | 223,955,470 | | 113,549,145 | | 17.12.31 기준 보통예금 잔액(92.547,774원은 위 탁사업비 잔액 및 2018 년 사업비 일부 포함) |
| 단 기 투 자 자 산 | 3,000,000 | | 3,000,000 |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출자 |
| 2) 비 유 동 자 산 | | 5,082,000 | | 5,082,000 | |
| (2) 유 형 자 산 | | 5,082,000 | | 5,082,000 | |
| 비품및집기 | 5,082,000 | | 5,082,000 | | 17.01.01 회계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당시 비품 및 집기의 금액을 추정하여 책정함 |
| 자산총계 | | 232,037,470 | | 121,631,145 | |
| 2. 부 채 | | | | | |
| 1) 유 동 부 채 | | 23,153,726 | | 6,816,597 | |
| 퇴직적립금 예수금 | 9,986,322 | | | | 17년 입사자 퇴직적립금 예수 |
| 예 수 금 | 13,167,404 | | 6,816,597 | | 사회보험료, 소득세 예수 |
| 2) 비 유 동 부 채 | | 82,506,037 | | 65,885,280 | |
| 퇴직 급여 충당 부채 | 82,506,037 | | 65,885,280 | | 17년말 기준 입사1년이 상 사원11명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 |
| 부채 총 계 | | 105,659,763 | | 72,701,877 | |
| 3. 순 자 산 | | | | | |
| 1) 자 본 금 | | 42,677,005 | | 48,929,268 | |

| 자 본 금 | 42,677,005 | | 48,929,268 | | 3기 자본금은 17.01.01 회계를 새롭게 정리하면 서 재무제표를 맞추기 위 해 설정한 자본금. 4기 자본금은 17.12.31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정 에 따라 금액 조정 |
|-------------------|------------|-------------|------------|-------------|---|
| 1) 잉 여 금 | | 83,700,702 | | | |
| (당 기 순 이 익) | 83,700,702 | | | | 보통예금 계좌 잔액이 많아 당기순이익이 많이 잡힘. 보통예금 계좌 중 사업비계좌 잔액 92,547,774원은 반납해야함. 이를 반영한다면 자산총계 139,489,696원부채총계 105,659,763원자본총계 33,829,933원으로 당기순손실 8,847,072원발생 |
| 자 본총 계 | | 126,377,707 | | 48,929,268 | |
| 부채와자본총계 | | 232,037,470 | | 121,631,145 | |

- 51 -

2 2017년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원)

| 관 | 항 | 목 | 금액(원) | 비율(%) | 비고 |
|-----|-----|-------------------|---------------|--------|---|
| 기부 | 금수입 | | 65,778,535 | 3.69% | |
| | 회비수 | - 입 | 19,504,440 | 1.09% | cms 인출 수수료를 제한 금액 |
| | 후원금 | 급수입 | 150,000 | 0.01% | |
| | 강의외 | 리래수입 | 46,124,095 | 2.58% | 전직원업무시간 내 발생한 강의 수입,회의참석수당 등 외부활동 수입50% 반납계좌, 통합지원사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상금800만 원포함 |
| 사업: | 수입 | | 1,671,566,618 | 93.68% | |
| | 목적시 | 나업수입(법인) | 4,500,000 | 0.25% | |
| | | 기획사업수입 | 0 | 0.00% | |
| | | 기타사업수입 | 4,500,000 | 0.25% | 공공구매전문상담기관 운영 사업 이윤 |
| | 목적시 | 사업수입(용역) | 1,667,066,618 | 93.42% | |
| | | 육성사업수입 | 641,584,528 | 35.96% | |
| | | 협동조합지원사업수입 | 107,700,000 | 6.04% | |
| | | 사회적기업지원사업수입 | 195,500,000 | 10.96% | |
| | | 마을기업지원사업수입 | 250,000,000 | 14.01% | |
| | | 기초컨설팅지원사업수입 | 32,000,000 | 1.79% | |
| | | 공공구매전문상담기관사업수입 | 50,000,000 | 2.80% | |
| | | 공주컨설팅사업수입 | 19,918,000 | 1.12% | |
| | | 예비마을기업사업수입 | 22,000,000 | 1.23% | |
| | | 충남도마을기업홍보판로지원사업수입 | 48,000,000 | 2.69% | |
| | | 청년활동가사업수입 | 300,000,000 | 16.81% | |
| | | 기타용역사업수입 | 364,090 | 0.02% | 시군역량강화사업 이윤 |
| 사업 | 외수입 | | 10,073,755 | 0.56% | |
| | 이자수 | 누입(사업비) | 349,428 | 0.02% | |
| | 이자수 | ├ 입 | 55,210 | 0.00% | |
| | 잡수입 | 2 | 9,669,117 | 0.54% | 2016년 2기 확정 부가세환급금 6,365,240원포함, 아산지역자활센터워크샵법인지 원비용포함,육성사업창업팀지급 이행보증보험발급수수료포함 |
| 기타 | 수입 | | 36,975,786 | 2.07% | |
| | 기타수 | 우입(마을) | 20,936,225 | 1.17% | 마을기업지원센터일비반납(4인16 년정근수당8,753,400원포함) |

- 52 -

| | 기타수입(협동) | 9,558,526 | 0.54% | 협동조합지원센터일비반납 |
|----|-----------------|---------------|-------|---|
| | 기타수입(SE) | 5,245,000 | 0.29% | 사회적기업팀일비반납 |
| | 기타수입(육성) | 1,236,035 | 0.07% | 사회혁신놀이터팀일비반납 |
| 세입 | 계 | 1,784,394,694 | 100% | |
| 경상 | 비 | 82,251,782 | 4.84% | |
| | 인건비(법인) | 22,119,837 | 1.30% | |
| | 퇴직적립금(법인) | 1,001,507 | 0.06% | 위탁사업비에서 포함되지 못한 인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
| | 급여(법인) | 16,077,452 | 0.95% | 위탁사업비에서 포함되지 못한 인원에 대한 급여 |
| | 원천예수금(법인) | 92,400 | 0.01% | |
| | 사회보험료사업자부담분(법인) | 3,548,478 | 0.21% | 위탁사업비에서 포함되지 못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
| | 상여금(법인) | 900,000 | 0.05% | 추석상여금5만원지급-18명 |
| | 잡급(급여) | 500,000 | 0.03% | 16년협동조합현장지원사업정산인 력에대한활동비 |
| | 운영비(법인) | 36,123,395 | 2.12% | |
| | 복리후생비(법인) | 3,863,820 | 0.23% | 조의금,축의금,동아리활동비,워크 숍비용등 |
| | 여비교통비(법인) | 2,804,347 | 0.16% | |
| | 통신비(법인) | 1,516,840 | 0.09% | 인터넷전화요금 등 |
| | 수도광열비(법인) | 0 | 0.00% | |
| | 지급임차료(법인) | 10,407,940 | 0.61%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
| | 수선비(법인) | 68,500 | 0.00% | |
| | 보험료(법인) | 6,325,030 | 0.37% | 위탁사업보증보험 |
| | 도서인쇄비(법인) | 200,000 | 0.01% | |
| | 소모품비(법인) | 38,400 | 0.00% | |
| | 비품구입비(법인) | 3,429,000 | 0.20% | 사무실이전시 중고비품인수 |
| | 차량유지비(법인) | 3,881,494 | 0.23% | 법인차량모닝리스비용 |
| | 지급수수료(법인) | 3,588,024 | 0.21% | 전자수입인지,공증비용,법인결산 조정수수료,세무대행수수료등 |
| | 잡비(법인) | 0 | 0.00% | 법인에서 사업비전도금입출금정 리를 위해 17년 말 일자로 전도 금대차조정을 위해 잡비로 비용 처리함. |
| | 팀관리비(SE) | 4,132,970 | 0.24% | 사회적기업팀 일비 반납 후 팀운 영비로 사용 |
| | 회의비(SE) | 1,265,340 | 0.07% | |
| | 복리후생비(SE) | 1,725,960 | 0.10% | |

| | 여비교통비(SE) | 879,280 | 0.05% | |
|-----|-------------|---------------|--------|------------------------------|
| | 도서인쇄비(SE) | 118,900 | 0.01% | |
| | 지급수수료(SE) | 88,090 | 0.01% | |
| | 잡비(SE) | 55,400 | 0.00% | |
| 팀관 | · 리비(협동) | 6,451,770 | 0.38% | 협동조합지원센터 일비 반납 후 팀운영비로 사용 |
| | 회의비(협동) | 955,100 | 0.06% | |
| | 복리후생비(협동) | 1,541,160 | 0.09% | |
| | 여비교통비(협동) | 565,120 | 0.03% | |
| | 도서인쇄비(협동) | 262,900 | 0.02% | |
| | 소모품비(협동) | 10,550 | 0.00% | |
| | 지급수수료(협동) | 7,170 | 0.00% | |
| | 잡비(협동) | 3,109,770 | 0.18% | |
| 팀관 | - 리비(육성) | 2,038,930 | 0.12% | 사회혁신놀이터팀 일비 반납 후 팀운영비로 사용 |
| | 회의비(육성) | 511,830 | 0.03% | |
| | 복리후생비(육성) | 43,200 | 0.00% | |
| | 여비교통비(육성) | 98,800 | 0.01% | |
| | 도서인쇄비(육성) | 74,800 | 0.00% | |
| | 소모품비(육성) | 158,100 | 0.01% | |
| | 비품구입비(육성) | 1,600 | 0.00% | |
| | 잡비(육성) | 1,150,600 | 0.07% | |
| 팀관 | 리비(마을) | 11,384,880 | 0.67% | 마을기업지원센터 일비 반납 후 팀운영비로 사용 |
| | 회의비(마을) | 5,010,640 | 0.29% | |
| | 복리후생비(마을) | 1,979,700 | 0.12% | |
| | 여비교통비(마을) | 253,000 | 0.01% | |
| | 도서인쇄비(마을) | 400 | 0.00% | |
| | 소모품비(마을) | 2,017,400 | 0.12% | |
| | 비품구입비(마을) | 525,740 | 0.03% | |
| | 지급수수료(마을) | 220,000 | 0.01% | |
| | 잡비(마을) | 1,378,000 | 0.08% | |
| 사업비 | | 1,588,435,982 | 93.40% | |
| 목적 | 사업비(법인) | 9,762,500 | 0.57% | |
| | 기획사업비(법인) | 0 | 0.00% | |
| | 조직사업비(법인) | 5,892,690 | 0.35% | 총회,이사회,이사회워크숍,이사추 석선물등 |
| | 교육사업비(법인) | 350,000 | 0.02% | |

| | 홍보사업비(법인) | 1,223,640 | 0.07% | 뉴스레터제작,호스팅연장,도메인 연장등 |
|----|------------------|---------------|--------|-------------------------|
| | 연대사업비(법인) | 484,000 | 0.03% | |
| | 업무추진비(법인) | 1,812,170 | 0.11% | 사무처장,공동대표업무추진 |
| | 목적사업비(용역) | 1,578,673,482 | 92.83% | |
| | 육성사업비 | 603,094,857 | 35.46% | |
| | 협동조합지원사업비 | 107,700,000 | 6.33% | |
| | 사회적기업지원사업비 | 195,500,000 | 11.50% | |
| | 마을기업지원사업비 | 249,661,706 | 14.68% | |
| | 기초컨설팅지원사업비 | 26,587,606 | 1.56% | |
| | 공공구매전문상담기관사업비 | 39,235,414 | 2.31% | |
| | 공주컨설팅사업비 | 17,435,000 | 1.03% | |
| | 예비마을기업사업비 | 18,220,220 | 1.07% | |
| | 충남도마을기업홍보판로지원사업비 | 48,000,000 | 2.82% | |
| | 청년활동가사업비 | 267,130,089 | 15.71% | |
| | 시군역량강화사업비 | 6,108,590 | 0.36% | |
| 사업 | 외비용 | 30,006,228 | 1.76% | |
| | 사업비 환수 | 29,830,950 | 1.75% | 사업비집행잔액반납 |
| | 이자비용 | 7,437 | 0.00% | |
| | 사업비 이자반납 | 51,923 | 0.00% | |
| | 잡비 | 115,918 | 0.01% | |
| 세출 | 계 | 1,700,693,992 | 100% | |
| 세입 | 계-세출계 | 83,700,702 | | |

3 퇴직금 적립현황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17.12.31 기준 지급해야할 퇴직금(a) | 92,572,890 | 17년 12월 31일자로 모든 사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
| 퇴직금적립 계좌 잔액(b) | 44,883,389 | 17.12.31 기준 퇴직금적립계좌 잔액 |
| 퇴직금적립 계좌 부족분(c=a-b) | 47,689,501 | |

4 보통예금 명세서

| 계정명 | 계좌 별칭 | 금액(원) | 가용 여부 | 비고 |
|------|--------------------|------------|----------|--|
| 보통예금 | 15 광역특화사업 | 12 | 여 | |
| 보통예금 | 17 아산시 시군역량강화(사업비) | 611,774 | 반납 | 반납예정 |
| 보통예금 | 15 학교협동조합연수 | 724 | 여 | |
| 보통예금 | 15 협동조합리모델링 | 281,111 | 여 | |
| 보통예금 | 15 협동조합지원사업 | 270 | 여 | |
| 보통예금 | 16 마을기업 | 10,783 | 여 | |
| 보통예금 | 16 청년활동가지원 | 7,861 | 여 | |
| 보통예금 | 17 육성사업위탁기관(간접비) | 6,241,695 | 반납 | 반납예정 (전담인력 변경에 따른 인건비 차액발생) |
| 보통예금 | 16 협동조합현장지원 | 2,876 | 여 | |
| 보통예금 | 17 공주컨설팅(사업비) | 21,483,133 | 여 | |
| 보통예금 | 17 마을기업(사업비) | 371,110 | 반납 | 반납예정 |
| 보통예금 | 17 육성사업창업팀(사업비) | 32,463,912 | 반납 | 반납예정(창업팀 미사용 사업비) |
| 보통예금 | 17 청년활동가(사업비) | 32,884,742 | 반납 | 반납예정 |
| 보통예금 | 17 공공구매(사업비) | 10,772,458 | 부 | 18년 1월까지 사업 진행 |
| 보통예금 | 17 기초컨설팅(사업비) | 5,415,990 | 부 | 18년 1월까지 사업 진행 |
| 보통예금 | 예비계좌 | 1,725 | 여 | |
| 보통예금 | 17 협동조합기재부(사업비) | 6,094 | 반납 | 반납예정 |
| 보통예금 | 강의외래수입(법인) | 17,956,308 | Ф | 전직원업무시간내발생한강의수입,회의 참석수당등외부활동수입50%반납계좌, 통합지원사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상금 800만원포함 |

| 보통예금 | 마을기업 판로지원(사업비) | 1,293 | 여 | |
|------|----------------|-------------|---|---|
| 보통예금 | 법인(기타소득) | 5,457,705 | 부 | 16년까지강사비소득세원천징수계좌 |
| 보통예금 | 신한 거래중지 계좌 | 586 | 여 | |
| 보통예금 | 17 예비마을기업(사업비) | 3,779,999 | 부 | 사업비 부가세 |
| 보통예금 | 예수금(법인) | 17,864,097 | 부 | 사회보험료회사분개인분,강사비소득세 원천징수계좌 |
| 보통예금 | 임차료(법인) | 61,151 | 여 | 임차료납부계좌 |
| 보통예금 | 자조기금(법인) | 47,520 | 여 | 회원회비직접입금계좌 |
| 보통예금 | 전도금(법인) | 6 | 여 | |
| 보통예금 | 충청권연대사업비 | 500,990 | 부 | 사회적경제충청권연대사업계좌 |
| 보통예금 | 통합운영비(법인) | 4,000,279 | 여 | 법인운영비계좌 |
| 보통예금 | 퇴직적립금(법인) | 44,883,389 | 부 | 퇴직금적립계좌 |
| 보통예금 | 팀관리비(마을) | 11,874,222 | 여 | 마을기업지원센터 일비 반납 계좌. (4인16년정근수당8,753,400원포함) |
| 보통예금 | CMS회비(법인) | 2,794,021 | 여 | 회원회비CMS입금계좌 |
| 보통예금 | 팀관리비(협동) | 1,155,163 | 여 | 협동조합지원센터 일비 반납 계좌 |
| 보통예금 | 팀관리비(SE) | 3,013,924 | 여 | 사회적기업팀 일비 반납 계좌 |
| 보통예금 | 팀관리비(육성) | 8,547 | 여 | 사회혁신놀이터팀 일비 반납 계좌 |
| | 합계(a) | 223,955,470 | | |

5 보통예금 가용 여부 현황

| 순번 | 내역 | 금액(원) | |
|----|--|-------------|---------------------------------------|
| 1 | 보통예금 전체 잔액 합계 | 223,955,470 | |
| 2 | 반납하거나 사업종료일이 남은 사업비 계좌 잔액 합계 | 92,547,774 | |
| 3 | 법인에서 가용 불가 계좌 잔액 합계 | 68,706,181 | 사회보험료 예수, 소득세 예수, 퇴직적립금, 충청권연대사업기금 |
| 4 | 법인에서 가용 가능 계좌 잔액 합계(a) | 62,701,515 | |
| 5 | 퇴직금적립 부족분(b) | 47,689,501 | |
| 6 | 퇴직적립 계좌 부족분(47,689,501원)을 적립할 경우 법인혜서 가용 가능 계좌잔 약합계(a-b) | 15,012,474 | |

6 급여/퇴직급 지급현황

| 월 | 직원 수 | 금액(원) | 비고 |
|--------|--------|-------------|----|
| 1 | 18 | 38,044,987 | |
| 2 | 18 | 38,664,667 | |
| 3 | 19 | 38,358,112 | |
| 4 | 19 | 39,751,000 | |
| 5 | 19 | 39,854,520 | |
| 6 | 18 | 37,902,760 | |
| 7 | 18 | 37,982,760 | |
| 8 | 19 | 39,736,280 | |
| 9 | 19 | 41,732,760 | |
| 10 | 19 | 39,632,760 | |
| 11 | 19 | 39,736,280 | |
| 12 | 19 | 39,681,000 | |
| 핞 | 계 | 471,077,886 | |
| 월 | 퇴사 직원수 | 금액(원) | |
| 1월~12월 | 4 | 16,455,261 | |

7 목적사업(용역) 수입지출명세서

O 사회적기업지원사업

| 관 | 항 | 목 | 세목 | 금액(원) |
|-------|------------|-------------|----|-------------|
| 사업수입 | | | | 195,500,000 |
| | 목적사업수입(용역) | | | 195,500,000 |
| | | 사회적기업지원사업수입 | | 195,500,000 |
| 사업외수입 | | | | 36,778 |
| | 이자수입(사업비) | | | 36,778 |
| 세입계 | | | | 195,536,778 |
| 사업비 | | | | 195,500,000 |
| | 목적사업비(용역) | | | 195,500,000 |
| | | 사회적기업지원사업비 | | 195,500,000 |

| | | 인건비(SE) | 154,357,727 |
|-------|----------|-----------|-------------|
| | | 경비(SE) | 32,749,103 |
| | | 일반관리비(SE) | 8,393,170 |
| 사업외비용 | | | 36,778 |
| | 사업비 이자반납 | | 36,778 |
| 세출계 | | | 195,536,778 |
| 총계 | | | 0 |

O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관 | 항 | 목 | 세목 | 금액(원) |
|-------|------------|--------|-----------------------|-------------|
| 사업수입 | | | | 641,584,528 |
| | 목적사업수입(용역) | | | 641,584,528 |
| | | 육성사업수입 | | 641,584,528 |
| 사업외수입 | | | | 215,936 |
| | 이자수입(사업비) | | | 215,936 |
| 세입계 | | | | 641,800,464 |
| 사업비 | | | | 603,094,857 |
| | 목적사업비(용역) | | | 603,094,857 |
| | | 육성사업비 | | 603,094,857 |
| | | | 심층면접및사전진단컨설팅비 (육성) | 3,723,560 |
| | | | 운영경비(육성) | 13,070,410 |
| | | | 업무추진비(육성) | 1,459,190 |
| | | | 간접비(육성) | 3,098,390 |
| | | | 간접사업비(육성) | 80,978,244 |
| | | | 직접사업비(육성) | 462,862,990 |
| | | | 인건비(육성) | 37,902,073 |
| 세출계 | | | | 603,094,857 |
| 총계 | | | | 38,705,607 |

O 협동조합지원사업

| 관 | 항 | 목 | 세목 | 금액(원) |
|-------|------------|------------|----|-------------|
| 사업수입 | | | | 107,700,000 |
| | 목적사업수입(용역) | | | 107,700,000 |
| | | 협동조합지원사업수입 | | 107,700,000 |
| 사업외수입 | | | | 21,239 |
| | 이자수입(사업비) | | | 21,239 |

| 세입계 | | | | 107,721,239 |
|-------|-----------|-----------|-----------|-------------|
| 사업비 | | | | 107,700,000 |
| | 목적사업비(용역) | | | 107,700,000 |
| | | 협동조합지원사업비 | | 107,700,000 |
| | | | 인건비(협동) | 89,945,149 |
| | | | 경비(협동) | 15,940,051 |
| | | | 일반관리비(협동) | 1,814,800 |
| 사업외비용 | | | | 15,145 |
| | 사업비 이자반납 | | | 15,145 |
| 세출계 | | | | 107,715,145 |
| 총계 | | | | 6,094 |

O 마을기업지원사업

| 관 | 항 | 목 | 세목 | 금액(원) |
|-------|------------|------------|-----------|-------------|
| 사업수입 | | | | 250,000,000 |
| | 목적사업수입(용역) | | | 250,000,000 |
| | | 마을기업지원사업수입 | | 250,000,000 |
| 사업외수입 | | | | 32,816 |
| | 이자수입(사업비) | | | 32,816 |
| 세입계 | | | | 250,032,816 |
| 사업비 | | | | 249,661,706 |
| | 목적사업비(용역) | | | 249,661,706 |
| | | 마을기업지원사업비 | | 249,661,706 |
| | | | 인건비(마을) | 149,815,281 |
| | | | 사업비(마을) | 62,500,000 |
| | | | 관리운영비(마을) | 37,346,425 |
| 세출계 | | | | 249,661,706 |
| 총계 | | | | 371,110 |

O 공공구매 전문상담기관 사업

| 관 | 항 | 목 | 세목 | 금액(원) |
|-------|------------|----------------|----|------------|
| 사업수입 | | | | 50,000,000 |
| | 목적사업수입(용역) | | | 50,000,000 |
| | | 공공구매전문상담기관사업수입 | | 50,000,000 |
| 사업외수입 | | | | 7,872 |
| | 이자수입(사업비) | | | 7,872 |
| 세입계 | | | | 50,007,872 |

| 사업비 | | | | 39,235,414 |
|-----|-----------|---------------|-----------|------------|
| | 목적사업비(용역) | | | 39,235,414 |
| | | 공공구매전문상담기관사업비 | | 39,235,414 |
| | | | 인건비(공공) | 14,012,600 |
| | | | 지역사업비(공공) | 16,252,700 |
| | | | 여비(공공) | 2,252,400 |
| | | | 이윤(공공) | 4,500,000 |
| | | | 부가가치세(공공) | 2,217,714 |
| 세출계 | | | | 39,235,414 |
| 총계 | | | | 10,772,458 |

O 기초컨설팅 사업

| 관 | 항 | 목 | 세목 | 금액(원) |
|-------|------------|-------------|-----------|------------|
| 사업수입 | | | | 32,000,000 |
| | 목적사업수입(용역) | | | 32,000,000 |
| | | 기초컨설팅지원사업수입 | | 32,000,000 |
| 사업외수입 | | | | 3,596 |
| | 이자수입(사업비) | | | 3,596 |
| 세입계 | | | | 32,003,596 |
| 사업비 | | | | 26,587,606 |
| | 목적사업비(용역) | | | 26,587,606 |
| | | 기초컨설팅지원사업비 | | 26,587,606 |
| | | | 경비(기초) | 3,387,606 |
| | | | 컨설팅비용(기초) | 23,200,000 |
| 세출계 | | | | 26,587,606 |
| 총계 | | | | 5,415,990 |

O 청년활동가 사업

| 관 | 항 | 목 | 세목 | 금액(원) |
|-------|------------|-----------|----|-------------|
| 사업수입 | | | | 300,000,000 |
| | 목적사업수입(용역) | | | 300,000,000 |
| | | 청년활동가사업수입 | | 300,000,000 |
| 사업외수입 | | | | 14,831 |
| | 이자수입(사업비) | | | 14,831 |
| 세입계 | | | | 300,014,831 |
| 사업비 | | | | 267,130,089 |
| | 목적사업비(용역) | | | 267,130,089 |

| | 청년활동가사업비 | | 267,130,089 |
|-----|----------|---------------|-------------|
| | | 인건비(청년) | 232,813,555 |
| | | 운영기관활동비(청년) | 8,000,000 |
| | | 사업설명회(청년) | 204,600 |
| | | 활동가선발(청년) | 771,200 |
| | | 의무교육사전워크숍(청년) | 3,208,750 |
| | | 모니터링(청년) | 1,907,440 |
| | | 공통교육(청년) | 3,583,932 |
| | | 심화교육(청년) | 3,006,356 |
| | | 매듭교육(청년) | 3,462,360 |
| | | 월간회의(청년) | 762,572 |
| | | 성과보고회(청년) | 2,741,000 |
| | | 일반수용비(청년) | 2,875,150 |
| | | 키움프로젝트 | 3,793,174 |
| 세출계 | | | 267,130,089 |
| 총계 | | | 32,884,742 |

O 공주컨설팅 사업

| 관 | 항 | 목 | 세목 | 금액(원) |
|-------|------------|-----------|-----------|------------|
| 사업수입 | | | | 19,918,000 |
| | 목적사업수입(용역) | | | 19,918,000 |
| | | 공주컨설팅사업수입 | | 19,918,000 |
| 사업외수입 | | | | 133 |
| | 이자수입 | | | 133 |
| 세입계 | | | | 19,918,133 |
| 사업비 | | | | 17,435,000 |
| | 목적사업비(용역) | | | 17,435,000 |
| | | 공주컨설팅사업비 | | 17,435,000 |
| | | | 인건비(공주) | 14,770,000 |
| | | | 경비(공주) | 2,598,000 |
| | | | 일반관리비(공주) | 67,000 |
| | | | 이윤(공주) | 0 |
| | | | 부가가치세(공주) | 0 |
| 세출계 | | | | 17,435,000 |
| 총계 | | | | 2,483,133 |

O 예비마을기업 사업

| 관 | 항 | 목 | 세목 | 금액(원) |
|-------|------------|------------|-------------|------------|
| 사업수입 | | | | 22,000,000 |
| | 목적사업수입(용역) | | | 22,000,000 |
| | | 예비마을기업사업수입 | | 22,000,000 |
| 사업외수입 | | | | 219 |
| | 이자수입(사업비) | | | 219 |
| 세입계 | | | | 22,000,219 |
| 사업비 | | | | 18,220,220 |
| | 목적사업비(용역) | | | 18,220,220 |
| | | 예비마을기업사업비 | | 18,220,220 |
| | | | 사업추진비(예비마을) | 18,220,220 |
| 세출계 | | | | 18,220,220 |
| 총계 | | | | 3,779,999 |

O 마을기업 홍보판로지원 사업

| 관 | 항 | 목 | 세목 | 금액(원) |
|-------|------------|-----------------------|-------------|------------|
| 사업수입 | | | | 48,000,000 |
| | 목적사업수입(용역) | | | 48,000,000 |
| | | 충남도마을기업홍보판로 지원사업수입 | | 48,000,000 |
| 사업외수입 | | | | 1,293 |
| | 이자수입(사업비) | | | 1,293 |
| 세입계 | | | | 48,001,293 |
| 사업비 | | | | 48,000,000 |
| | 목적사업비(용역) | | | 48,000,000 |
| | | 충남도마을기업홍보판로 지원사업비 | | 48,000,000 |
| | | | 사업추진비(마을판로) | 48,000,000 |
| 세출계 | | | | 48,000,000 |
| 총계 | | | | 1,293 |

O 아산시 시군역량강화 사업

| 관 | 항 | 목 | 세목 | 금액(원) |
|-------|-----------|---|----|-----------|
| 사업외수입 | | | | 364 |
| | 이자수입(사업비) | | | 364 |
| 세입계 | | | | 364 |
| 사업비 | | | | 6,108,590 |

| | 목적사업비(용역) | | | 6,108,590 |
|-----|-----------|------------|--------------------|------------|
| | | 시군역량강화사업비 | | 6,108,590 |
| | | | 인건비(시군) | 3,281,000 |
| | | | 경비(시군) | 2,119,500 |
| | | | 일반관리비(시군) | 344,000 |
| | | | 이윤(시군) | 364,090 |
| | | | 부가가치세(시군) | 0 |
| 세출계 | | | | 6,108,590 |
| 총계 | | 1011171 00 | 101년 191에 이크리아 중계기 | -6,108,226 |

^{*} 사업비가 2018년 1월에 입금되어 총계가 음수(-)로 표시됨.

정관 변경안 심의

2018년 총회준비위원회

주문사항 다음과 같이 정관 개정안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개정 신구 대조표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개정사유) |
|---|--|---|
|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u>충청남도 아산 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공과대학 9130호</u> 에 두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각 시·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 시 배방읍 호서로 79, 20 호서벤처밸리 203호에 두 며, 충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각 시·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사무실 이전으로 주사 무소 변경 |
| 제7조 [사원의 권리] ① 사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 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원은 법인의 시설 및 자료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 [사원의 권리] ① 사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 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원은 법인의 시설 및 자료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사원과 동일한 자격 및 권리를 갖는다. ④ 정사원과 준사원, 후원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④ 신설용어의 차이로 인해서 회원과 사원이 구분된 바 본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해서 표현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이를 확인하였으며, 내규를 통하여 정사원, 준사원 및 후원사원의 권리를 설정하기위해서 정관에 신설조항이 필요하였음 |
| 제11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이상 3명 이하 2. 이사: 5명 이상 (이사장포함) 3. 감사: 2명 | 제11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u>1명</u> 2. 이사 : 5명 이상 (이사장포함) 3. 감사 : 2명 |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임원의 구성인원의 수 를 이사장 1인으로 정 하였는 바, 정관의 개 정을 통하여 이사장 및 기타 임원의 수에 |

- 67 -

| | | 변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확인 후 정관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야할 |
|--|--|---|
|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공동직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공동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장을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된 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또는 공석이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실무자 대표 1인을 당연직이사로 포함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된 임원에 대하여는임기만료 또는 공석이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것으로 판단됨 [변경전] ② 총회준비 위원회에서 임원의 구성 인원의 수를 이사장 1인으로 정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함 [변경후] ② 조직 내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실현하기 다양한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총회준비위원회 내이사추천위원회에서 신규 조항신설을 제안함. 단,사무처장 1인 및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추천받은 자 1인을 당연직이사로 포함할지 논의가 필요함 |

회원내규 신구 대조표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개정사유) |
|---|---|--|
| 제목 <u>회원내규(안)</u> | 제목 회원내규 | (안) 삭제 |
| 제2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정관에 따라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행사하는 회원으로 정기적인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쳤으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이 일부 제한되는 회원을 말한다. 3. 후원회원은 개인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u>회원으로</u>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이 <u>업</u> 부 제한되는 회원으로 후원하는 <u>회원으로</u>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이 <u>업</u> 는 회원을 말한다. | 제2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정관에 따라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행사하는 회원으로 정기적인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쳤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사를 피력한 자 또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를 말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이 제한된다. 3. 후원회원은 개인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권, 의결권이 없다. | 하고, 회원에 따른 자격과 권리를 규정 |
| 제4조 (회원의 회비) ① 모든 회원은 매월 1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기납, 반기납, 년납도 가능하다. ② 회원은 매월 일정액 이상의 회비를 자동이체 (CMS)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 (회원의 회비) ① 모든 회원은 매월 1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기납, 반기납, 년납도 가능하다. ② 회원은 매월 일정액 이상의 회비를 자동이체 (CMS)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정회 원으로 한정되어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함 |

- 69 -

| ③ 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 시에는 이사회 | ③ 단, 정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 시에는 | |
|------------------------------|------------------------------|--|
| 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제한한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 |
| 다. 단 회원이 회비미납 또는 감면의 사유가 발생할 | 제한한다. 단 회원이 회비미납 또는 감면의 사유가 | |
|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조 | 발생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 |
| 정할 수 있다. | 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회원투표 및 임원선출 내규 신구 대조표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개정사유) |
|---|---|---|
| 제7조 (의결투표 공고) 의결투표는 <u>투표일 20일 전에</u> 법인의 소식지, 홈페이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의안과 투표 절차에 대해 공고 하여야 한다. | 제7조 (의결투표 공고) 의결투표는 <u>투표일 전에</u> 법인 의 소식지, 홈페이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 으로 회원들에게 의안과 투표 절차에 대해 공고하여 야 한다. | 이사회 의결에 따라 |
| 제12조(이사장, 이사, 감사의 정수) 이사회는 임원이 임기 만료 50일전에 이사진과 감사의 정수를 정하고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사장, 이사, 감사의 정수) 이사회는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진과 감사의 정수를 정하고 5인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투표와 관련한 기간을 삭제하기로 하여이 삭제함 |
| 제16조(선거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u>선거일 30일</u>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선거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u>선거일 전에</u> 공고하여야 한다. | |
| 제13조(후보의 자격) 회원은 정관과 회원내규, 임원 내규 등 우리 법인이 정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한 회원은 이 사와 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 부칙 제3조 (적용제외) 제13조(후보의 자격)는 제2018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회원가입 기 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 이사회 의결에 따라 새로운 후보를 영입 하기 위해서 기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로 함 |

※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 기간 제한 삭제 관련 설명

선거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선거 이전에 충분히 후보자를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실체적 민주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기간 제한을 없앨 경우, 사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지 못하면 선거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기간 제한을 없앨 경우라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선거를 행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보아 타당할 정도로 충분한 사정을 경유하여 선거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한다.

- 71 -

성희롱 방지 내규 신구 대조표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개정사유) |
|---|--|--|
| 제2조 (성희롱의 정의) 단체내 성희롱이라 함은 우리 법인 회원 간에 단체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과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u>활동</u>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제2조 (성희롱의 정의) 단체내 성희롱이라 함은 우리 법인 회원 간에 단체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과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법률 개정에 따라 개 정 내용(성희롱 적용 범위 확대)을 삽입함 |
| 제3조 (성희롱 고충처리의 원칙) 성희롱에 관한 문제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조사 처리하며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는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 (성희롱 고충처리의 원칙) <u>누구든지 단체 내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u> 성희롱에 관한 문제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며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는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 법률 개정에 따라 개 정 내용(피해자의 보 호조치 강화)을 삽입 함 |
| 부칙 제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u>양</u> <u>성평등에 관한 법률</u>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 다. | | 법률 개정에 따라 개 정 내용을 삽입함 |

임원 선출의 건

2018년 총회준비위원회

주문사항 이사(장) 및 감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018년 총회준비위원회

주문사항

다음과 같이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무처

※ 2018년 법인 사무처 활동방향 및 활동목표는 2017년 사업 방향을 준용하여 설정하였음.

세부 과제별 추진 계획은 2018년 신임 임원, 자문위원 및 사무처 주요 실무자를 주축으로 한 '2018년 법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TFT' 를 구성하여 구체화할 예정임.

활동방향

- 변화되는 정치 지형의 변화와 지역의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의 전문 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 안정적인 고용환경의 구축과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 한 조직을 구축한다.
- O 사회경제 유관 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변화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다.
- 각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고유 목 적 사업을 병행한다.
- O 상근 실무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에 집중한다.

■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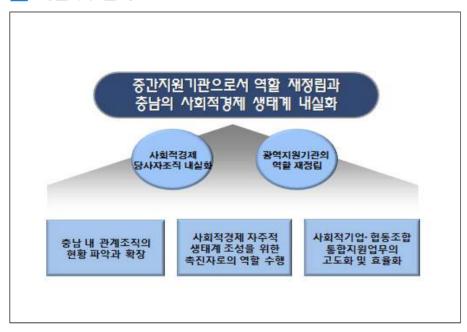
-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회원 증모 활동과 후원금 확대
- 시군 단위별 사회경제 조직과 공동 협업 작업 강화
- O 센터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통합적 조정 역할 강화
- 사회적경제 의제 발굴과 정책제안, 법·제도 개선

■ 사업과제 (요약)

| 사업과제 | 주요내용 |
|------------------|--|
| 회 원 사 업 | ○ 회원관리 및 기본서비스 매뉴얼화: 감사 문자 및 뉴스레터 발송○ 일상적인 회원 증모운동 진행○ 특별 후원금 모금 운동 진행 |
| 조 직 사 업 | ○ 조직 개편을 통한 내부 혁신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사무처 인력 보강으로 운영의 내실화 추진○ 회의체계 정립과 안정화 추진, 실무자와 임원간의 소통강화 |
| 센터지원 | ○ 충사넷의 미션과 비전의 지속적인 공유작업 진행 ○ 법인과 센터간, 센터와 센터간 연대와 협력 강화 ○ 행정 및 기타 업무지원 : 경영지원, 업무협약 등 |
| 홍 보 및 정 보 공 유 |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일간지, 주간지, SNS망 확대 ○ 인명DB 관리 및 사회적경제 e-마케팅 ○ 지역공동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와 협업 활성화 |
| 연 구 및 정 책 제 안 | ○ 각종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 집담회, 토론회 등○ 지역사회 실태 및 연구조사사업○ 시책분석 및 정책제안 : 법·제도 개선 활동 |
| 발 굴 및 역 량 강 화 | ○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내 외부 실무자 교육 매칭 ○ 지역혁신인재 발굴 · 육성 ○ 시군별 지역인재 및 자산 발굴을 위한 실천적 노력 |
| 기 금 등 자 산 조 성 | ○ 광역·기초내 지역공동체 통합거점 조성○ 기금 조성 및 배분사업 참여○ 자산기반 지역발전과 사회적 자본의 발굴·활용·축적 |
| 교 류 등 연 대 협 력 |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민관협치·거버넌스 : 각종 공공기관 위원회 참여 등 ○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위탁사업

■ 비전 및 전략



■ 추진 방향

- 양적 성장 둔화에 따른 신규모델 발굴
- 일상적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과제 해결
- 지원기관의 분화발전, 섹터간 융복합 대응 필요
- 현장 수요에 기반한 통합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회적경제 조직 고도화, 자력화 지원

■ 사업 내용

■ 시회적기업 분야

가. 신규 모델 발굴・확산

- 지역 내 창업보육지원센터와 협업 프로젝트로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설명회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가치 지향 기업 발굴 및 매뉴얼화

나. 사회적기업 인증지원

- (1) 현장 밀착형 인증 컨설팅
- (2) 수요자 중심 제도 및 요건 설명회
- 지역순회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 월요일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 (3) 인증사회적기업 사후관리 설명회

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충남형 사회적기업 기본교육
- 부처형의 소관 부처와 공조하고 맞춤형 성장지원

라. 재정지원사업 지원

- 재정지원 조사·분석으로 업종별, 단계별 전문 컨설팅 추진
- 지자체 사회적기업 담당자 대상 교육

마.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

- (1) 상시적인 전문상담 채널 확보
- (2) 체계적 현장진단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및 대안제시
- 현장진단 툴을 활용한 연차별, 엽종별 현장수요 파악
-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DB 구축

바. 사회적기업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 사업보고서 작성 및 자율경영공시 관리지원

사. 일반인 대상 교육

- 사회적기업가정신 전문교육 운영
- 대상별 교육 안을 제작하여 통일화된 정보전달
- 공공부문 맞춤형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아.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교육

-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 공공구매 특화지원조직 설립·운영

자. 홍보 프로세스

-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이용하여 이미 구추되 홍보프로세스 활용
- 사회적기업 정책 및 기업홍보를 지속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차. 기초컨설팅

- 대면 방식의 직·간접적인 노출로 사회적기업 니즈 및 현안 파악
- 진단 → 분석 → 계획 → 실행 → 점검의 단계별 컨설팅
- 프로보노 간담회, 성과공유나눔 프로그램을 통한 노하우 공유

■ 협동조합 분야

가.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

-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보 및 서식 제공
-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 충족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 (3)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지원시 지역현황 및 인적구성 확인을 통한 인가 적합 여부 사전 검토 체계 구축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사전 검토, 현 장실사 지원

나. 신규 모델 발굴 · 확산

- (1) 협동조합으로 설립 가능한 기존 단체・법인 등의 설립・조직변경 지원
- (2) 협동조합 사업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확산
- (3)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비즈니스 모델발굴을 통해 타 협동조합에 적용, 확산
- (4) 지역별·업종에 따른 시·군 지자체의 특화된 (사회적)현동조합 발굴·전파
- (5)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협동조합 모델 발굴
- (6) 학교 협동조합과 청년 협동조합을 대상화한 맞춤형 협동조합 모델 수립

다. 협동조합 운영상담 및 현장지원

- (1) 운영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사업부진, 관리역량 저하를 겪는 조합에 게 상담지원
- 성장단계별 협동조합 우영상황 파악을 통해 유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 밀착지원
- 사회적협동조합들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

- 민간 · 공공 유통 인프라를 이용한 판로 지원 연계를 통해 협동조합 매출확대
- 부처의 전문상담지원기관과 지역 내 전문 프로보노(회계, 노무, 법무 등)를 통한 경영상담 및 컨설팅

(2) 현장지원

- 전담인력 직접 파견으로 현장방문 후 애로사항,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모니터링
- (사회적)협동조합의 유영 상 문제는 지역 전문 프로보노 코칭을 통하여 해결
- 모니터링 일지 축적을 통해 체계적인 협동조합 관리·지원 시스템 형성

라. 협동조합 수요자 맞춤형 교육

- 협동조합 설립과 인가에 필요한 기본 서식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정기교육 진행
- 유형별·분야별 맞춤형 교육 진행
- 협동조합 당사자들의 니즈를 파악을 통한 교육 수행
- 사업의 경영능력을 높여 경쟁력 있는 기업체로 성장유도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컨설팅 영역 강화

마. 협동조합 경영공시 지원

- (1) 경영공시 대상자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배부
- (2) 협동조합 의사결정기구 이해 촉진과 운영방법 교육

바. 홍보 및 인식확대

- 빠른 확산과 광범위한 전달이 가능한 오픈SNS 적극 활용해 노출빈도 증가
- 홍보를 통해 유입된 사람들의 데이터 관리
- 지역 협동조합의 다양한 사례 컨텐츠 발굴과 전달에 집중을 통해 지역 전반에 궁 정적 인식 제공
-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오프라인 강연과 이벤트, 행사 개최
- 공공기관,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 제도 정책 홍보

🔳 기대효과

□ 사회적기업 분야

| 영역별 과업 | 구 분 | 정량적 효과 | 정성적 효과 |
|-------------------|--|---|---|
|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 |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역협의체 정기 참여 및 지원 사회적경제 유통망구축 지원 (4개) 따숨상회 상시 운영 체계 가동 (상시) | 지역 내 시업 연계망 구축 및 내부가래 활성화, 지원 선순환 구조 구축 사회적 경제 조직간 파트너쉽 형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구성으로 일반 인식 확대 및 공동 실천 방안 수립 사회적경제 조직 및 자원관리 효율성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자원 DB구축 | · 경영성과 개선 및 시회적 성과 강화 · 사회적기업으로서 활동 역량 강화 ·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 강화 |
| 빌 | 날 확산 | 청년 네트워크 운영 지원 | · 신규 모델 발굴 및 사회적기업가 인재 발굴 |
| | 회적기업 인증지원 | 권역별 인증(지정) 설명회 인증전환 컨설팅 | · 시회적 경제 조직 질적, 양적 성장 ·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률 신장 |
| | 일상 경영지원 | 은 · 오프라인 상담센터 운영 Q&A 자료집 제작 사후관리 경영 컨설팅 관련 정보 홈페이지 공유 | ·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 지원기관 업무 효율성 및 소통 능력 향상 · 당사자 조직의 원활한 사회적기업 활동 · 즉각적인 경영 애로 해결 |
| 및 현장지원 | 현장 지원 | 현장 방문 모니터링 (인증사회적기업)(연2회) 통합 DB 운영 |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기업의 구체 needs 파악 개별 기업 개선 과제 계획 수립 및 필요 자원 연계 효과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 |
| | 적기업 평가 !니터링 지원 | 온라인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반기 1회) 자율 경영공시 설명회(반기 1회) | 소셜미션 상기 및 사회적기업 책임성 인식 강화 경영 자율 공시제 참여 업체 증대를 통한 자발적 사회적회계 인식 확대 및 강화 |
| ō | 행정 지원 | 선정 및 재정지원 심사 지원 공고 및 심사 설명회 | 신규 선정 및 재정지원 사업 진행 시 현장실사 및 심의 선정요건 및 서류 작성법 기타 요건 안내 |
| | 일반인 교육 | 정기 설명회(월 1회) | ·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및 협동사회경제 저변 확대 강화 |
| 교육 | 사회적기업 | 세무회계 교육(반기 1회) 인사노무 교육(반기 1회) 경영-마케팅 교육(연 5회) | · 사회적경제 통합 교육을 통한 확장 기능성 제고 · 상시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공고화를 통한 표준화된 교육 제공 |
| | 대상 |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교육 | · 공익성과 수익성 강화를 위한 균형적인 교육 |
| | 내부 직원 교육 | 이론 학습 및 실무 교육 (월 1회) | · 조직 및 직원 역량 강화 및 컨설팅 능력 배양 · 원활한 업무 수행과 양질의 컨설팅 제공 |
| | 사 연구 및 성책 제안 | 기 구축된 DB자료 통계 분석 | · 계량화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정확한 진단과 대 안 구축 |
| | 웹진 발행(월 1회) SNS 등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홍보 | | · 협동사회경제에 대한 저변 확대 · 정보 공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
| | | 보도자료 상시 제공 (수시) | |

- 83 -

□ 협동조합 분야

| 영역별 과업 | | 정량성과 | 정성적 효과 | |
|-------------------|-----------|--------------------------------------|--|--|
| | |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협동 조합 협의회 설립 지원 | · 지역 내 시업 연계망 구축 및 내부거래 활성화, 지원 선순환 구조 | |
| | | 지역협의체 정기 참여 및 지원 | 구축 | |
| 네트워크 - | 구축 및 지원연계 | 협동조합 포럼(주간행사) | · 사회적 경제 조직간 파트너쉽 형성 ·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 | |
| | | 따숨상회 운영 및 유통판매전문조직 참여 및 지원(상시) | ·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 조직 및 자원관리 효율성 제고 | |
| | | 지역자원 맵핑 구축 및 MOU | | |
| | |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우수사례 발굴 | · 지역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확산 · 협동조합 신규 • 우수모델 발굴 확산 | |
| 신규 모 | 델 발굴・확산 | 전략분야 모델 발굴(연간 2건) | · 전략분야 설립지원 모델 구축과 교육 커리큘럼 구성 확산 · 지역기반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전파를 통한 협동조합의 사 회적 기치 확산 | |
| | | ONE-STEP 지원 체제 구축 | ·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설립지원 | |
| 설립 상담 | 당 및 인가 지원 | 설립상담 및 신고(인가) 서류검토 (상시) | · 사회적 목적에 맞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애로점 해소 | |
|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변경 지원(상시) | · 협동조합 조기정착 기반 마련 | |
| | | 온·오프라인 상담센터 운영 (상시) | | |
| | 일상적 경영지원 | 사후관리 경영 컨설팅(상시) | · 협동조합 운영 정상화 · 전문컨설팅을 통해 기업경영의 지속성 지원 | |
|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 | | 관련 정보 홈페이지 공유 (상시) | CCC202 0% /10001 /170 /16 | |
| 된6시년 | ÷1717101 | 현장 방문 모니터링 | · 체계화된 밀착지원과 자원연계 | |
| | 현장지원 | 통합 DB 구축 | · 문제 해결을 통한 협동조합 운영 안정화 | |
| | | 통합 정기교육 (월 1회) | | |
| | | 정기총회 교육(반기 1회) | ·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현동조한의 필요 해소 | |
| | 교육 | 실무 분야별 교육(반기 1회) | ·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체로 유도 | |
| | | 실무자 역량강화(연 20회) | · 일반시민 대상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인식확산 | |
| | | 전략분야 교육커리큘럼 개발 (연간 2건) | | |
| 청도大히 | 경영공시 지원 | 협동조합 경영공시자료 작성 설명회 (1회) | · 협동조합 책임성 인식 강화 | |
| ਜ <u>ੁ</u> | ㅇㅇㅇ기 시전 | 경영공시 서류 검토 및 작성지원 | · 경영공시를 통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재확인. | |
| | | 뉴스레터 발행 (월 1회) | | |
| | | 카드뉴스 기획 발행(월 1회) | · 협동조합의 인지도 상승과 이해 제고 | |
| 홍보 | 및 기타업무 | SNS 등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 협동조합의 성공적 모델 확립 및 확산 · 협동조합간 네트워크 강화 | |
| | | 보도자료 상시 제공(수시) | · 정보 공유를 통한 협동조합 사업 활성화 | |
| | | 행정적 지원(수시) | | |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전문상담 기관

■ 목적 및 목표

- 지역내 공공시장의 사회적기업 제품 인식확대 및 공공구매 활성화
-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
- 사회적기업 전문위원을 활용한 효과적인 판로지원
- 지역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황파악 및 잠재수요 발굴
- 체계적인 공공기관 판로지원 시스템 및 생태계 구축
- 수요-공급 조사를 통한 내부거래 활성화

■ 사업 추진 전략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한 전략적 접근 토대 마련
- 공공구매 우선 제도 홍보 및 MOU협약을 통한 공공기관에 대한 판로접근 용이성 강화
- 공공구매 전문상담위원 풀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전문 인적 네트워크 활용
- 공공기관 판로 개척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매칭 등 기업지원
-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제도 홍보 및 당사자 기업 제품 홍보 강화

■ 사업 내용별 정량 목표

| 세부항목 | 정량적 목표 |
|-----------------------------|--------|
| 지자체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영업활동 | 140회 |
|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상담회 | 분기별 1회 |
|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진출 역량강화 교육 | 3회 |
|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구매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 0월 |
| 전문위원 간담회 | 분기별 1회 |

| 세부항목 | 정량적 목표 |
|---|----------|
|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홍보 [공공구매 우수사례 발굴/ 홍보 / 간담회 등] | 분기별 1회 |
| 공공구매 직·간접적 구매 혜택 기관 집계 | 월별 정리 보고 |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2회 |
| 전문상담기관 사업 홍보 | 10회 |

4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기관

■ 추진방향

- 창업기관 및 대학 등 다양한 주체 연대를 통한 육성 아이템 발굴
- 실천적 사고를 만드는 창업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적용
- 디자인씽킹, 액션러닝 등 실천적 사고를 위한 워크숍 기법 도입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지속적인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컨설팅
- 창업팀 인큐베이팅을 위한 플랫폼 공고화
- 창업자(팀) 간의 연대로 스스로 주체가 되는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사업 내용

가. 창업팀 상시발굴·사전선발

(1) 사전선발 심사일정(연 1회 / 하반기 예정)

| 구분 | 내용 | 시간 | 일정(안) |
|------|----------------------------|----|---------|
| 서면심사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서류심사표에 따른 심사 | 미정 | 2018.11 |
| 심층면접 | 사회적경제의 이해,소셜미션 수립등 20시간 배정 | 미정 | 2018.11 |
| 대면심사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대면심사표에 따른 심사 | 미정 | 2018.11 |

- (2) 사전선발 교육 프로그램
- 기본교육(8시간)

| 차수 | 과 정 | 내 용 | 시간 |
|----|-------------|-------------------------------------|----|
| 1 | 사회적경제의 이해 |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 3h |
| 2 | 선배창업가의 도전정신 | 사회적기업 운영사례 (성공기, 실패기) 사회적기업가 리더쉽 | 2h |
| 3 | 경영일반 | 사회적기업의 경영 마케팅에 대한 기본 이해 | 3h |

- 워크숍 및 심층 멘토링(12시간)

| 차수 | 과 정 | 내 용 | 시간 |
|----|----------------|--------------------|----|
| 1 | 지다트로 미 시스(이그쇼) | 소셜미션 및 변화이론 워크숍 | 4h |
| 1 | 집단토론 및 실습(워크숍) | 비즈니스모델링 | 4h |
| 2 | 심화 멘토링 | 소셜미션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 4h |

나.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1) 교육 프로그램

| 구분 | 내용 | 시간 | 일정(안) |
|----------|-------------------------------------|-----|-------|
| 회계행정교육 | 2018 운영지침 및 회계지침 교육과 실습 | 5시간 | 3월 중 |
| 브랜딩교육 | 브랜딩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 각 창업팀 브랜딩화 워크숍 | 5시간 | 4월 중 |
| 마케팅교육 | 사회적경제 마케팅 사례와 워크숍 | 5시간 | 6월 중 |
| 임팩트 투자교육 |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와 데모데이 워크숍 | 5시간 | 7월 중 |

(2) 담임 및 전문 멘토링

| 구분 | 내용 | 시간 | 일정(안) |
|--------|-------------------------------------|----|---------|
| 담임 멘토링 | 창업팀 대면 멘토링 진행/ 사업화 관련 멘토링 및 자원연계 | - | 월 1회 이상 |
| 전문 멘토링 | 사업화 과정 중 전문화 또는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진행 | _ | 연 3회 이상 |

(3) 자원연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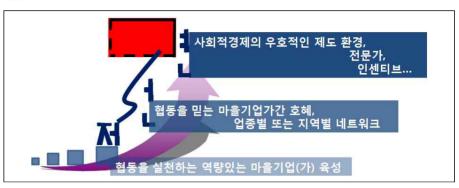
| 구분 | 내용 | 시간 | 일정(안) |
|---------|---|----|-------|
| 소셜벤처 존 | 대학 축제 및 지역축제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홍보 부스 운영 | - | 연중 |
| 공공구매 | 충남 공공구매 교육 연계 및 지원방안 모색 | - | 연중 |
| 펠로우쉽 데이 |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연계 | _ | 12월 |

■ 사업 내용별 정량 목표

| ᆁᆸᅕᄝ | | 목표 | | |
|------------|------------------------------|--|--------------------------------|--|
| | 세부항목 | 계획 | 년 | |
| | 상시 발굴 | 상시상담, 사업설명회, 관련 지역프로그램 진행 | 상시 | |
| 발굴 및 홍보 | 온라인 홍보 | 메신저, 카페, 페이스북, 뉴스레터 등 | 상시 | |
| | 언론 홍보 | 보도자료, 뉴스기사 | 상시 | |
| 창업 | 육성팀수 | 연초에 모집 | 연 30개 이상 | |
| | 우수모델 | 육성팀 대비 70%이상 | 연 21개 이상 | |
| 멘토링 | 담임멘토링 | 팀당 월 1회 이상 | 팀별 연 8회 이상 | |
| 댄도당 | 전문멘토링 | 팀당 3회 이상 | - | |
| 교육 | 의무교육 | 선진지 탐방 및 창업교육프로그램 | 팀별 연 20시간 이상, 참여율 80% 이상 | |
| 사업비 | 사업비 집행률 | 월 1회 점검 | 99% 이상 | |
| 시합의 | 회계처리기준 준수 | 월 1회 점검 | 1% 미만 | |
| 자원연계 | 창업자금 및 공간 투자 및 기술지원 연계 | 크라우드펀딩 및 창업지원 프로젝트 연계 | - | |
| | 소셜벤처존 구축 | 대학축제 및 지역의 행사와 연계하여 창업팀이 참여하는 소셜벤처존 구축 | 연 2회 이상 | |
| 만족도 | 간담회 및 토론회 | 상하반기 1회 이상 | 연 2회 이상 | |
| 네트워크 | 선후배창업팀 | 창업팀 자치모임, 사회적기업박람회 등 | 연 2회 이상 | |
| 사후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90% 이상 | |
| | 펠로우쉽 구축 | 해당년도 사업종료후 펠로우쉽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연계와 지원방안 마련 | - | |

5 마을기업지원센터

■ 비전 및 전략





■ 추진방향

- 양적 성장 둔화에 따른 신규모델 발굴
- 일상적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과제 해결
- 지원기관의 분화발전, 섹터간 융복합 대응 필요
- 현장 수요에 기반한 통합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회적경제 조직 고도화, 자력화 지원

■ 사업 내용

가. 설립 전 교육 및 신규모델 발굴 확산

- 설립 전 교육
- 예비마을기업 선발 및 인큐베이팅
- 신규마을기업 발굴 컨설팅

나. 마을기업 지정 지원

- 현장실사 전문 자문
- 18년 마을기업 현지조사 및 선정지원

다.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 현황분석서 발간
- 마을기업 상시 상담 및 모니터링
- 필요 전문 컨설팅(상시경영컨설팅)
- 제품·판로 전문지원단 운영
- 마을기업 오리엔테이션 및 맞춤경영교육

라. 판로지원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활용
- 판로 전문지원조직 운영: 따숨상회
- 마을기업 제품 체험단 운영
- 마을기업 홍보 컨텐츠 개발·배포
-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및 지역축제

마. 기타 필요한 업무

- 마을기업 홍보
- 지역 전문가 발굴(지역자원 맵핑)
- 마을기업 연구회 운영

■ 사업 내용별 정량 목표

| 구분 | 성과지표 | 정량지표 | 성과물 |
|--------------|--------------------------|---------|----------|
| | | 4H(입문) | |
| 설립전 교육 | ☑ 설립 전 교육 | 10H(기본) | 결과보고서 |
| 및 신규모델 | | 10H(심화) | |
| 발굴 확산 | ☑ 예비마을기업 선발 및 인큐베이팅 | 13개 기업 | 결과보고서 |
| | ☑ 신규마을기업 발굴 컨설팅 | 10회 | 컨설팅보고서 |
| 마을기업 | ☑ 현장실사 전문 지문 | 16회 | 컨설팅 보고서 |
| 선정지원 | ☑ 18년 마을기업 현지 조사 및 선정지원 | 16회 | 검토보고서 |
| | ☑ 마을기업현황분석서 발간 | 1회 | 분석보고서 |
| 상시 | ☑ 마을기업 상시 상담 및 모니터링 | 200회 | 상담일지 |
| 경영컨설팅 및 | ☑ 필요 전문 컨설팅(상시경영컨설팅) | 20회 | 컨설팅보고서 |
| 현장지원 | ☑ 제품판로 전문지원단 운영 | 2회 | 컨설팅보고서 |
| | ☑ 신규 마을기업 성장 프로그램 | 3회 | 결과보고서 |
| | ☑ 공동브랜드개발 및 홍보 활용 | 4회 | 제공고객 명단 |
| 판로지워 및 | ☑ 판로 전문지원조직 운영: 따숨상회 | 4회 | 활동보고서 |
| 지역네트워크 | ☑ 마을기업 제품 체험단 운영 | 10회 | 뉴스레터 홍보물 |
| 구축 | ☑ 마을기업 홍보 컨텐츠 개발배포 | 1회 | 결과보고서 |
| | ☑ 전국 마을기업박람회 및 지역축제 참가지원 | 4회 | 결과보고서 |
| | ☑ 뉴스레터 발성월 l회) | 12회 | 뉴스레터 |
| | ☑ SNS 운영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 | 수시 | 활동보고서 |
| 기타 필요한 업무 | ☑ 지역 전문가 자원 맵핑(간담회) | 4회 | 결과보고서 |
| 7 . | ☑ 마을기업연구회 운영 | 4회 | 결과보고서 |
| | ☑ 상근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샵 | 4ই) | 활동보고서 |

아산지역자활센터

시업방향

-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 아산자활' 슬로건으로 센터의 비전을 재확인 수정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의 효 과성을 증진
- 사업 참여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 적, 대인적, 정치·사회적 수준에서 임파워먼트 형성
- 센터 및 사업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운영,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 역량 강화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민·민 네트워크의 질적 성장을 적극 추진

■ 사업목표

| 영 역 | 내 용 | 실천 내용 | |
|------------|---------------------------------------|--|--|
| 장기계획 | 센터의 비전에 따른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실천 전략 세우기 |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 |
| | ① 자활근로사업 역량강화 | ▶ 참여자 교육, 훈련 강화 ▶ 자활기업 운영능력 강화(회계, 경영, 기술) | |
| 핵심자활 사업 | , ② 사업 참여인력 확보 | ▶ 참여자 확보 경로 다양화(동, 단체, 매체홍보 등) ▶ 예산 확보 활동 | |
| | ③ 자활사업 아이템 개발 | ▶지역과 주민의 현실에 적합한 아이템 개발 | |
| 참여자 | ① 교육담당자 역량강화 | ▶교육담당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활성화(자활기금활 용 확대) | |
| 교육 훈련 | ②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체계화 |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과 계획의 민주적 결정 (주민참여 프로그램 워크숍을 통해 실행)▶신규참여자 교육훈련 커리큘럼 만들기 | |

| 영 역 | 내 용 | 실천 내용 |
|-------|----------------------|--|
| | ③ 지역 교육연계 활성화 | ▶ 노동부, 새일센터 연계 ▶ 사업관련 현장 전문가 발굴과 연계 만들기 |
| 사례관리 | ① 주민과 공감대(rapport)형성 | ▶ 주민가정방문 실시(상반기 중) ▶ 주민 개별상담 ▶ 센터사례관리팀 조직 및 실시 |
| | ② 사례관리 기능강화 및 촉진 | ▶ 사례관리 교육 훈련 실시 |
| 실무자교육 | ① 자활기업 설립·운영 실무역량강화 | ▶ 자활기업 설립 매뉴얼 개발 ▶ 자활기업 회계, 경영, 기술지원 역량강화 (실무자 교육 및 외부 자원 연계 만들기) ▶ 각 사업별 자활기업 추진 전략, 단계 구체화 |
| 훈련 | ②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 ▶사례관리 교육 훈련 |

■ 사업내용

| 구분 | 사 업 명 | 사업대상(명) | 사 업 내 용 | 비고 |
|-------------|-----------|---------|--|----|
| 사례 관리형 | 게이트웨이 | 4 | 근로능력 경계선에 위치한 취약계층 자립기 반 마련 | |
| 기 장 | 착한밥상 | 7 | - 요식 사업 노하우 습득 - 육류 및 식사류 판매 | |
| 진 | 식품건조인건비지원 | 2 | - 자활기업 '착한식품'인력 지원 | |
| 이 경 | 누룽지인건비지원 | 1 | 자활기업 '누룽지행복' 인력 지원 | |
| 사 | 희망공작소 | 3 | - 전처리 작업 | |
| 회 | 휴온커피 | 4 | - 전문가 향상 및 커피판매 | |
| 서 비 | 작은먹거리 | 7 | - 수산물 소분업 | |
| · 스 형 | 치밥치킨 | 10 | - 치밥치킨 체인사업 | |
| 8 | 도우미지원 | 2 |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
| | 근로유지형 | 10 | - 읍·면동사무소 업무지원 | |
| 인턴·도우 | 복지도우미 | 6 | -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
| 미형 | 자활도우미 | 1 | - 자활사업 효율화를 위한 업무지원 - 기술 및 경력 습득 후 취업연계 | |
| 총10개 사업단 | | 57 | - 게 이 트 웨 이 : 1개 사업단 - 시장 진입형 : 1개 사업단 - 사회서비스형 : 5개 사업단 - 인턴·도우미형 : 3개 사업단 | |

2018년 예산안



2018년 예산(안)

(단위 : 원)

| 관 | 항 | 목 | 금액(원) | 비율(%) | 비고 |
|-----|-------------|------------------|---------------|--------|----------------|
| 기부 | 기부금수입 | | 58,000,000 | 4.57% | |
| | 회비수 | - 입 | 25,000,000 | 1.97% | |
| | 후원금 | 급수입 | 3,000,000 | 0.24% | |
| | 강의외 | 리래수입 | 30,000,000 | 2.37% | |
| 사업: | 수입 | | 1,185,029,000 | 93.42% | |
| | 목적시 | 사업수입(법인) | 1,000,000 | 0.08% | |
| | | 기획사업수입 | 1,000,000 | 0.08% | |
| | | 기타사업수입 | - | 0.00% | |
| | 목적시 | 나업수입(용역) | 1,184,029,000 | 93.35% | |
| | | 육성사업수입 | 489,829,000 | 38.62% | |
| | | 협동조합지원사업수입 | 107,700,000 | 8.49% | |
| | | 사회적기업지원사업수입 | 199,500,000 | 15.73% | |
| | | 마을기업지원사업수입 | 270,000,000 | 21.29% | |
| | | 기초컨설팅지원사업수입 | 42,000,000 | 3.31% | |
| | | 공공구매전문상담기관사업수입 | 55,000,000 | 4.34% | |
| | | 기타용역사업수입 | 20,000,000 | 1.58% | |
| 사업 | 외수입 | | 1,405,000 | 0.11% | |
| | 이자 | 누입(사업비) | 350,000 | 0.03% | |
| | 이자= | - 입 | 55,000 | 0.00% | |
| | 잡수입 |] | 1,000,000 | 0.08% | |
| 기타: | 수입 | | 24,000,000 | 1.89% | |
| | 기타수 | 누입(마을) | 9,000,000 | 0.71% | 각 사업비의 일비 반납금액 |
| | 기타수입(협동) | | 3,000,000 | 0.24% | 각 사업비의 일비 반납금액 |
| | 기타수입(사회적기업) | | 9,000,000 | 0.71% | 각 사업비의 일비 반납금액 |
| | 기타수입(육성) | | 3,000,000 | 0.24% | 각 사업비의 일비 반납금액 |
| 세입 | 세입계 | | 1,268,434,000 | 100% | |
| 경상I | 경상비 | | 54,800,000 | 4.33% | |
| | 인건ㅂ | 비(법인) | 5,000,000 | 0.40% | |
| | | 퇴직적립금(법인) | - | 0.00% | |

| | 급여(법인) | _ | 0.00% | |
|----|-----------------|---------------|--------|--|
| | 원천예수금(법인) | - | 0.00% | |
| | 사회보험료사업자부담분(법인) | - | 0.00% | |
| | 상여금(법인) | 5,000,000 | 0.40% |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
| | 잡급(급여) | - | 0.00% | |
| | 운영비(법인) | 30,600,000 | 2.42% | |
| | 복리후생비(법인) | 4,000,000 | 0.32% | |
| | 여비교통비(법인) | 2,000,000 | 0.16% | |
| | 통신비(법인) | 1,500,000 | 0.12% | |
| | 수도광열비(법인) | - | 0.00% | |
| | 지급임차료(법인) | 11,200,000 | 0.89% | |
| | 수선비(법인) | 500,000 | 0.04% | |
| | 보험료(법인) | 6,500,000 | 0.51% | |
| | 도서인쇄비(법인) | 200,000 | 0.02% | |
| | 소모품비(법인) | 100,000 | 0.01% | |
| | 비품구입비(법인) | 1,000,000 | 0.08% | |
| | 차량유지비(법인) | - | 0.00% | |
| | 지급수수료(법인) | 3,600,000 | 0.28% | |
| | 잡비(법인) | - | 0.00% | |
| | 팀관리비(사회적기업) | 7,200,000 | 0.57% | 수입대비 80% 지출 예상 |
| | 팀관리비(협동) | 2,400,000 | 0.19% | 수입대비 80% 지출 예상 |
| | 팀관리비(육성) | 2,400,000 | 0.19% | 수입대비 80% 지출 예상 |
| | 팀관리비(마을) | 7,200,000 | 0.57% | 수입대비 80% 지출 예상 |
| 사업 | н | 1,198,469,000 | 94.71% | |
| | 목적사업비(법인) | 14,440,000 | 1.14% | |
| | 기획사업비(법인) | 1,000,000 | 0.08% | 100만원*1회 |
| | 조직사업비(법인) | 8,040,000 | 0.64% | 이사회3만원*10명*4회 센터강회의1만원*6명*24회 전체월례회의1만원*20명*12회 총회300만원 |
| | 교육사업비(법인) | 1,500,000 | 0.12% | 임원워크숍2만원*10명*2회 실무자워크숍2만원*20명*2회 수시간담회30만원 |
| | 홍보사업비(법인) | 1,500,000 | 0.12% | |
| | 연대사업비(법인) | 1,200,000 | 0.09% |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월5만원 *12개월 전국통합지원기관대표자협의 회월5만원*12만원 |
| | 업무추진비(법인) | 1,200,000 | 0.09% | 월 10만원*12개월 |
| | 목적사업비(용역) | 1,184,029,000 | 93.57% | |
| | 육성사업비 | 489,829,000 | 38.71% | |
| | 협동조합지원사업비 | 107,700,000 | 8.51% | |

| | | 사회적기업지원사업비 | 199,500,000 | 15.77% | |
|---------|-------|---------------|---------------|---------|-----------------|
| | | 마을기업지원사업비 | 270,000,000 | 21.34% | |
| | | 기초컨설팅지원사업비 | 42,000,000 | 3.32% | |
| | | 공공구매전문상담기관사업비 | 55,000,000 | 4.35% | |
| | | 기타용역사업비 | 20,000,000 | 1.58% | |
| 사업 | 사업외비용 | | 12,150,290 | 0.96% | |
| | 사업비 | 비 환수 | 11,840,290 | 0.94% | 용역사업비의 99%사용 목표 |
| | 이자비 | 비용 | 10,000 | 0.00% | |
| | 사업터 | 비 이자반납 | 100,000 | 0.01% | |
| | 잡비 | | 200,000 | 0.02% | |
| 세출 | 세출계 | | 1,265,419,290 | 100.00% | |
| 세입계-세출계 | | 3,014,710 | · | | |

목적사업(용역)

1. **시회적기업 분0**: : 金 일억구천구백오십만원(₩199,500,000)

(단위 : 원)

| 구분 | | 비목 | 금액 | 구성비 |
|----|-------|------------------|-------------|--------|
| | 인건비 | 1 | 159,424,292 | 79.91% |
| | 경비 학 | 計 계 | 30,675,708 | 15.38% |
| | | 일반수용비 | 9,000,000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2,200,000 | |
| | 운영비 | 임차료 | 2,200,000 | |
| 경비 | | 기타운영비(복리후 생비) | 1,500,000 | |
| | 국내여비 | | 10,775,708 | |
| | 사업추진비 | | 5,000,000 | |
| | 일반관리비 | | 9,400,000 | 4.94% |
| | 합계 | | 195,500,000 | 100.0% |

2. 기초경영지원사업 분야: 金 사천이백만원(₩42,000,000)

(단위 : 원)

| 구분 | 비목 | 금액 | 구성비 |
|-----|-------|------------|--------|
| 인건비 | | 25,054,121 | 59.65% |
| | 소계 | 14,945,879 | 35.59% |
| | 일반수용비 | 14,945,879 | |
| 경비 | 국내여비 | 1,445,879 | |
| | 사업추진비 | 2,000,000 | |
| | 일반관리비 | 2,000,000 | 5.00% |
| | 합계 | 42,000,000 | 100.0% |

3. 협동조합 분야: 숲 일억칠백칠십만원(₩107,700,000)

(단위 : 원)

| | | | (단위 : 천 |
|------------|-----------|-------------|---------|
| 구분 | 비목 | 금액 | 구성비 |
| | ㅇ인건비 | 91,395,720 | 84.86% |
| | ㅇ경비합계 | 11,600,000 | 10.77% |
| | 일반수용비 | 4,100,000 | |
| 운영비 | 복리후생비 | 900,000 | |
| | 공공요금 및 재세 | 1,000,000 | |
| 여비 | 국내여비 | 3,600,000 |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2,000,000 | |
| o일반관리비(예비비 | 포함) | 4,704,280 | 4.37% |
| | 합계 | 107,700,000 | 100.0% |

4. **시회적기업가 육성시업**: 金 사억팔천구백팔십이만구천원(₩489,829,000)

(단위 : 원)

| 구분 | 비목 금액 | | | 비고 |
|---------|------------|---------------|-------------|-----|
| | , | 사업 운영비 합계 | 51,776,000 | · · |
| | | 소계 | 7,971,000 | |
| | 사전선발 및 | 심층면접 및 사전컨설팅비 | 2,804,000 | |
| | 사후 관리비 |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비 | 5,167,000 | |
| 사업운영비 | | 소계 | 43,805,000 | |
| | 사업운영비 | 인건비 | 25,600,272 | |
| | | 운영경비 | 14814478 | |
| | | 업무추진비 | 1,200,000 | |
| | | 간접비 | 2,190,250 | |
| | | 소계 | 438,053,000 | |
| 창업팀 지원금 | 간접사업비 | | 65,707,950 | |
| | 직접사업비 | | 372,345,050 | |
| | <u>합</u> 기 | 4) | 489,829,000 | |

5. 공공구매판로지원단 위탁사업: 숲오천오백만원(₩55.000.000)

| 7분 | 기본 기 | | | | |
|---------------|--|------------|--|--|--|
| 1 T | 인건비 | 26,700,000 | | | |
| | 소계 | 16,020,000 | | | |
| 3 4 n) | 운영비 | 7,120,000 | | | |
| 경비 | 지역사업비 | 6,675,000 | | | |
| | 공통사업비 | 2,225,000 | | | |
| 힐 | !반관리비 | 1,780,000 | | | |
| 이윤 | | 5,000,000 | | | |
| 부가가치세 | | 5,500,000 | | | |
| 합계 | | 55,000,000 | | | |

6. 마을기업 분야: 金 이억칠천만원(₩270,000,000)

(단위 : 워)

| | | | (61) 6 |
|-------|------------|-------------|--------|
| 구 분 | 비 목 | 금액 | 구성비 |
| o인건비 | | 161,931,525 | 59.97% |
| ٥٨ | 사업비 | 67,800,000 | 25.11% |
| | 소계 | 40,268,475 | 14.92% |
| | 국내여비 | 16,800,000 | |
| | 일반수용비 | 1,800,000 | |
| 관리운영비 | 임차료 | 6,600,000 | |
| | 공공요금 및 재세 | 1,200,000 | |
| | 일반관리비 | 13,868,475 | |
| 합계 | | 270,000,000 | 100.0% |
| | | | |

7. 충남이산지역자활센터

| 항목 | 금액 | 구성비(%) |
|------------|---------------|--------|
| 자활사업비 | 871,243,000 | 37.0% |
| 자활센터운영(보조) | 275,412,000 | 12.0% |
| 자활센터운영(자체) | 45,000,000 | 2.0% |
| 처우개선비 | 10,000,000 | 2.0% |
| 장애활동지원사업 | 1,146,000,000 | 49.0% |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 197,920,800 | 9.0% |
| 가사간병서비스사업 | 43,329,600 | 2.0% |
| 합계 | 2,588,905,400 | 100.0 |

기 타 안 건

2018년 총회준비위원회

기 타

2018년 총회준비위원회

공로패 수여

| 공로패 | | | | | |
|----------|-----------|--|--|--|--|
| 이윤기(이사장) | 최선희(공동대표) | | | | |

공로패

이윤기(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사람과 사회를 잇는 아름다운 충남을 위해 사회적경제 운동에 함께하신 노력이 아름답습니다. 연대와 협동, 순환과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며 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이사장으로 헌신하신 당신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2월 21일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일동

공로패

최선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더불어 숲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위해 헌신해 오신 노력에 찬사를 드립니다. 연대와 협동, 순환과 공생의 가치를 실천하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2월 21일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일동

우수위탁사업 표창

......

| wat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 y g y g y g y g y g y g y g y g y g 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관 및 각종 운영내규

2018년 총회준비위원회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제정 2012. 1. 19. 1차 개정 2014. 10. 31.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Chungnam Social Economy Network' (영문약자 "CNSENET")라 표기한다.
-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자활사업 등 (이하,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대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사원간의 협력, 지역민 참여확대, 민·관, 민·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하여 연대와 협동, 순환과 공생의 내발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공과대학 9130호에 두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각 시·군에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 1.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사업
 -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지원 사업
 - 3.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 4.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
 - 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확산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사업
 -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함에 부수되거나 긴밀히 연관되는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추진 사업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등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사 원

- 제6조 [사원의 자격과 종류] ① 사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사원은 개인과 단체 가입이 가능하며 정사원과 준사원, 후원사원으로 구분한다.
 - ③ 사원의 자격, 가입절차,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 [사원의 권리] ① 사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사원은 법인의 시설 및 자료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사원의 의무] 이 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9조 [사원의 탈퇴와 제명] ① 사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 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사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사원의 징계]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 사원으로서의 회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법인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 3.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4.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 ②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정직, 견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 1명 이상 3명 이하
 이사 : 5명 이상 (이사장포함)

3. 감사 : 2명

제12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이 법인의 사원으로 주민활동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 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공동직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공동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상임이 사장을 호선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된 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또는 공석이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선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축하다.
-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담행위
 -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8. 법원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9.「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는 당연 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임원의 성실 의무]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법령과 법인의 정관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이사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상임이사는 상근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를 대리하여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며 일상적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 제19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공동)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1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22조 [후원회장] 이 법인의 재정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 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원회장은 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제 4 장 총 회

제23조 [지휘와 구성] ①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사원들로 구성한다.

제24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이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사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사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 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사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하다.

제26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 담보, 증여, 대여, 매도, 기채 등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분사무소의 창설 및 승인
-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8.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 달성과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7조 [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

- 은 다른 사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총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한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8조 [의결제척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
- 제29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 제30조 [지휘와 구성] ① 이사회는 법인의 상설적 심의의결기구이다.
 - ② 이사회는 (공동)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 ③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단 공동 이사장일 경우 공동 이사장이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문에 불구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단 공동 이사장일 경우 공동이사장이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의 집행
-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 3. 예산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
-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9. 업무 추진을 위한 각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
- 10. 각 분사무소의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 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공동 이사장일 경우 공동이사장이 모두 동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3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 한 것으로 본다.
 - 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특별기구 및 사무처

- 제35조 [특별기구의 설치]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36조 [사무처] ① 법인의 사업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 및 특별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 제37조 [법인의 재산] 이 법인의 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제38조 [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39조 [재원] 이 법인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사업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 5. 기타
- 제40조 [예산 및 결산] ① 법인의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다음연도 2 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의 매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 [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주민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42조 [잉여금의 처분] 법인의 이 회계연도에 결산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의 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 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제43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4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5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등

- 제46조 [정관의 변경] 이 법안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사원의 3 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시에는 지체 없이 법인해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혹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귀속시킨다.
- 제49조 [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고지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1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52조 [정치중립의무] 이 법인은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 제53조 [인터넷 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분사무소의 규정 승인] 각 필요한 지역의 분사무소의 규정은 법인 정관에 준하여 제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2년 1월 19일

회원내규(안)

제정 2015. 2. 27.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규약(정관 제2장 제6조 제3항)에 필요한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과 참여민주주의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정관에 따라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회원으로 정기적인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 2.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쳤으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이 일부 제한되는 회원을 말한다.
 - 3. 후원회원은 개인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회원으로 선거 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이 없는 회원을 말한다.
- 제3조 (회원가입 절차)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가입절차를 거친다.
 - 1. 가입신청서 및 회원가입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 2. 사무처 방문 혹은 유선 상담
 - 3. 회원 승인 및 공지
 - ②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회원가입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과 단체의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조 (회원의 회비) ① 모든 회원은 매월 1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기납, 반기납, 년납도 가능하다.
 - ② 회원은 매월 일정액 이상의 회비를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과 피선 거권, 의결권을 제한한다. 단 회원이 회비미납 또는 감면의 사유가 발생할 경

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 (효력발생) 이 내규는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제4조 회원의 회비는 2015년 2월 27일 제4차 정기총회 총회원 정수 확정에 적용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개 정)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 제4조 (운영원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조직 운영원리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임원내규

제정 2013. 3.28.

- 제1조 임원은 이사장, 감사, 이사, 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설기관 또는 특별기구의 장, 회원조직 및 사업단의 책임자, 사무처의 실무책임자를 가르킨다.
- 제2조 임원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정관 및 활동규범을 준수하고, 임원 영입이나 활동상의 책임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제3조 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1만원 이상, 연 12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 임원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자하면 사퇴 1개월 이전에 사퇴의사를 소속 조직의 장에게 밝히고, 해당 조직의 장은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사무처에게 통지 한 이후에 사퇴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정당의 핵심적인 직책을 갖지 아니한다. 임원이 정당의 핵심적인 직책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은 회원내규에 준한다.

회원투표 및 임원선출 내규

제정 2013. 3.28.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민주적인 운영과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회원투표라 함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말한다.
- 제3조 (회원투표 종류) 회원투표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법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의결투표로 구분한다.
- 제4조 (회원투표 방법) 회원은 회원투표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투표소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의 투표방법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회원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자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방식을 정해야 한다.

제2장 의결투표

- 제5조 (의결투표 발의) 의결투표의 발의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이사장이 발의한다.
- 제6조 (의결투표 관리) 의결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5인 이내의 회원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투표관리위원은 의안에 대해 찬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사무처는 필요한 실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 (의결투표 공고) 의결투표는 투표일 20일 전에 법인의 소식지, 홈페이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의안과 투표 절차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명부 작성) 의결투표가 공고되면 사무처는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투표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회원이 명부에 이의가 있

는 경우에는 투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재심하여야 한다.

- 제9조 (회원투표 운동) 회원은 허위사실 유포, 인신 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회원의 투표참 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 배포할수 있다.
- 제10조(의결종족수) 의결투표는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참여와 투표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결의 효력) 회원투표를 통한 의결사항은 우리 법인의 최고의사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한 회기에 같은 사안에 대한 회원투표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제3장 선거투표

- 제12조(이사장, 이사, 감사의 정수) 이사회는 임원이 임기 만료 50일전에 이사진과 감사의 정수를 정하고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13조(후보의 자격) 회원은 정관과 회원내규, 임원내규 등 우리 법인이 정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한 회원은 이사와 감사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 제14조(입후보의 등록) 이사와 감사가 되고자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다.
 - 1. 사진이 첨부된 생년월일과 주요경력 등이 포함된 자기 소개서
 - 2. 우리 법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 3. 위원회, 사업단 등 회원조직의 추천 의결서 또는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서
- 제15조(후보자격심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 1. 이사와 감사 후보의 자격 심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 2. 후보자격심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 후보 등록서류의 신뢰성

- 회원내규 및 임원내규 등 법인의 제반규정 준수 의지와 능력 소지 여부
- 기타 우리 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항 여부 등
-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심사에서 부적격 심사의견을 받은 사람에 대해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 4.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당선자의 결정) 투표자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투표방법 등은 의결투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이사 등의 선임) 회원은 본인 또는 타인을 이사, 감사, 사무처장 등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는 회원내규와 임원내규를 준수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 이사장과 감사 등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선거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처장은 반드시상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회원의견조사

제20조(회원의견조사) 이사회는 우리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회원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전화ARS 또는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회원의견조사의 효력) 이사회는 회원의견조사 결과를 존중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내규는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성희롱 방지 내규

제정 2013. 3.28.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각종 활동과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과 대책을 전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제2조 (성희롱의 정의) 단체내 성희롱이라 함은 우리 법인 회원 간에 단체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과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활동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성희롱 고충처리의 원칙) 성희롱에 관한 문제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 자의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며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는 인사 위원회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 (성희롱 고충처리) 활동 또는 업무 중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회원의 고충 접수와 처리를 위해 여성 임원을 성평등노동위원으로 지정하며, 임원과 상근활동가는 성희롱에 대한 고충이 발생한 것을 아는 즉시 성평등노동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성평등노동위원은 고충 접수 즉시 사무처장에 보고하고, 사무처장은이사장 등과 협의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하여야한다.
- 제5조 (성희롱 예방지침) 임원과 상근활동가는 아래와 같은 성희롱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회원들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1.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 2.. 회원간 존칭을 사용한다.
 -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 4.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5. 회식 때 술과 유흥을 강요하지 않는다.
 - 6. 공식적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 7.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8.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 9.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10. 양성평등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제6조 (성희롱 예방교육) 사무처장은 년 1회 상근활동가 전원이 참여하는 성희롱 방지 및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 내규 및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에 대한 예시를 임원과 회원이 숙지하도록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 (성희롱 제보 불이익 금지) 성평등노동위원이나 사무처장, 이사장 등 임원은 성 희롱에 대한 고충을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 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8조 (성희롱으로 보는 행위 예시)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는 다음과 예시와 같다.

- 1. 눈으로 하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 옷은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 등을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2. 말로 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3. 몸으로 하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4.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 는 행위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내규는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및 민주주의 일 반원칙에 따른다.

회원명단 및 회원가입 안내

2018년 총회준비위원회



연대와 협동, 순환과 공생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꿈꿉니다!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자활기업 ● 소설베처 ● 마을광동체 ● 풀뿌리 주민조직









지원하다

기반을 다지다

역량을 강화하다

네트워크하다

- 설립 상담 및 행정지원
- 기초컨설팅 및 현장 모니터링
- 홍보 및 교육 지원
- 협업공간 및 창업 지원
- 정보포털 및 아카이브 운영
- 조사 및 정책제안, 제도개선
- 현장실험 및 사례 발굴
- 혁신파크 등 융복합 사업
- 사업체 비즈니스 고도화
-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지원
- 시군 현지화 및 역량 강화
- 모금역량 강화 및 기금 조성
- 민관산학연언 프로보노 연계
- 중간지원조직간 교류와 협력
- 시민사회와 연대와 현력
- 거버넌스 활성화



어떻게 운영하나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법인 사무국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작은 정 성과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 운동 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고 거듬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대안형 사회단체입니다.

법인 산하의 부설 센터(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아산지역자활센터)는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연대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 로 운영됩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위탁하는 권역별 지원센터 지정기관 으로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전달·보완하는 중간지원조직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원이 되시면…

-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 꿈을 이루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충남지역 사회적경제 관련 소식 및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다양한 행사 및 소모임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충남지역공동체플랫폼 아카이브 자료를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교육비 및 대관료 등을 5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명단 -『아름다운 기부자』

(2017, 12, 31, 현재)

"기부자 한분한분의 정성,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 연번 | 회원구분 | 이름(상호) | 연번 | 회원구분 | 이름(상호) | 연번 | 회원구분 | 이름(상호) |
|--------|------------|----------------------|----|------------|------------|-----|--------------|---------------------|
| 1 | 정회원 | (주)깔끄미하우스 | 40 | 정회원 | 이정오 | 79 | 후원회원 | 박기연 |
| 2 | 정외권 정회원 | (주)열린문디자인 | 40 | 정외권 정회원 | 이종민 | 80 | 우권되권 후원회원 | 박정우 |
| 3 | | (구)철인군니자인 (주)천군만마 | 41 | | 이종현 | 81 | | 박종우 |
| 3 4 | 정회원 | | 42 | 정회원 | 이용언 이혁수 | 82 | 후원회원 | 박주석 |
| | 정회원 | 강종건 강지원 | 43 | 정회원 | | 83 | 후원회원 | 박진도 |
| 5 6 | 정회원 | 강시원 권이랑 | 44 | 정회원 | 이현수 | 84 | 후원회원 | 박선도 박형선 |
| | 정회원 | | | 정회원 | 임대혁 | | 후원회원 | |
| 7 | 정회원 | 권용옥 | 46 | 정회원 | 장기수 | 85 | 후원회원 | 소금꽃협동조합 |
| 8 | 정회원 | 김금순 | 47 | 정회원 | 장동순 | 86 | 후원회원 | 솔향기의료생협 |
| 9 | 정회원 | 김기배 | 48 | 정회원 | 장은희 | 87 | 후원회원 | 심전호 |
| 10 | 정회원 | 김만석 | 49 | 정회원 | 장인선 | 88 | 후원회원 | 아산풍성한영농조합 |
| 11 | 정회원 | 김오열 | 50 | 정회원 | 전성환 | 89 | 후원회원 | 유재정 |
| 12 | 정회원 | 김의수 | 51 | 정회원 | 정하영 | 90 | 후원회원 | 유재준 |
| 13 | 정회원 | 김종수 | 52 | 정회원 | ㈜즐거운밥상 | 91 | 후원회원 | 윤미경 |
| 14 | 정회원 | 김종현 | 53 | 정회원 | 최선희 | 92 | 후원회원 | 이미경 |
| 15 | 정회원 | 김지영 | 54 | 정회원 | 최영준 | 93 | 후원회원 | 이상구 |
| 16 | 정회원 | 김지훈 | 55 | 정회원 | 최인묵 | 94 | 후원회원 | 이수연 |
| 17 | 정회원 | 김진선 | 56 | 정회원 | 최재권 | 95 | 후원회원 | 이수희 |
| 18 | 정회원 | 김태응 | 57 | 정회원 | 최현아 | 96 | 후원회원 | 이원돈 |
| 19 | 정회원 | 김효배 | 58 | 정회원 |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 | 97 | 후원회원 | 이은영 |
| 20 | 정회원 | 노병갑 | 59 | 정회원 | 하재찬 | 98 | 후원회원 | 이지연 |
| 21 | 정회원 | 박기남 | 60 | 정회원 | 홍은일 | 99 | 후원회원 | 인효진 |
| 22 | 정회원 | 박노진 | 61 | 정회원 | 황은하 | 100 | 후원회원 | 임종민 |
| 23 | 정회원 | 박미란 | 62 | 후원회원 | (주)새림종합환경 | 101 | 후원회원 | 전지훈 |
| 24 | 정회원 | 박상우 | 63 | 후원회원 | (주)윈드케어시스템 | 102 | 후원회원 | 정명진 |
| 25 | 정회원 | 박성호 | 64 | 후원회원 | 강경림 | 103 | 후원회원 | 정지혜 |
| 26 | 정회원 | 박영식 | 65 | 후원회원 | 강윤정 | 104 | 후원회원 | 정진오 |
| 27 | 정회원 | 박용원 | 66 | 후원회원 | 고현주 | 105 | 후원회원 | 조주덕 |
| 28 | 정회원 | 박정현 | 67 | 후원회원 | 김기흥 | 106 | 후원회원 | 조현경 |
| 29 | 정회원 | 박춘섭 | 68 | 후원회원 | 김민숙 | 107 | 후원회원 | ㈜리움 |
| 30 | 정회원 | 신재학 | 69 | 후원회원 | 김수진 | 108 | 후원회원 | 채종헌 |
| 31 | 정회원 | 오광근 | 70 | 후원회원 | 김정섭 | 109 | 후원회원 | 최승호 |
| 32 | 정회원 | 오명래 | 71 | 후원회원 | 김지양 | 110 | 후원회원 | 추욱 |
| 33 | 정회원 | 우종한 | 72 | 후원회원 | 김태경 | 111 | 후원회원 | 표승언 |
| 34 | 정회원 | 유삼형 | 73 | 후원회원 | 김태우 | 112 | 후원회원 | 프라미스온 |
| 35 | 정회원 | 윤봉 환 | 74 | 후원회원 | 김현아 | 113 | 후원회원 | 한유정 |
| 36 | 정회원 | 이상순 | 75 | 후원회원 | 노가은 | | | |
| 37 | 정회원 | 이시헌 | 76 | 후원회원 | 늘꿈디자인 | | 총회위 | 113명 |
| 38 | 정회원 | 이원하 | 77 | 후원회원 | 문창기 | (정: | 회원 61명, | 년 113명 후원회원 52명) |
| 39 | 정회원 | 이윤기 | 78 | 후원회원 | 민대기 | | , | |

- 135 -- 136 -

CMS 회원가입 신청서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돈 보다는 '사람' 중심의 경제공동체… 경쟁 보다는 '협동' 중심의 지역공동체…

| 꼭 체크해주세요! | | 이상 회비 미납 이력이 없는 회원으로 목적으로 의결권 선거관·피선거권이 | | 1거권을 갖는 회원 |
|--------------------------|--------------------------------------|--|--|----------------|
| 이 름 (법인명) | | | 추천인 | |
| 소속 및 직위 |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 등록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 | 급에 사용됩니다. |
| 이 메 일 | | | | |
| 휴 대 전 화 | | | | |
| 우편물 수령주소 | | | | |
| 은행_계좌번호 | ()은행 / 겨 | 좌번호 : | | |
| 출금 희망일자 | □ 매월 5일 | □ 매월 25일 | □ 기타 (매월 | 일) |
| 후 원 금 액 | □ 월 5,000원 □ 월 30,000원 □ 기타 (월 | □ 월 10,000원 □ 월 50,000원 <u>원</u>) | □ 월 20,000원 □ 월 100,000원 실시납 (매년 | 원) |
| | | | |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회원가입 및 CMS자동이체를 통한 회비납부, |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 이메일, 은행계좌번호 | 기부금영수증 발급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일정기간동안 보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CMS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수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041-415-2012. 회원관리담당)

| . 1141-1 | 0 -1 87-1 | /미단 0 프린 | All 2 d - 11 All All | 04/11 18844 | · 上世 刊已 | 기다 0 프리 | T-T-\ T- | 222 | 큰 난근 ' | 11-10-1 | TIME! SE | T'1 * |
|----------|-----------|----------|----------------------|-------------|---------|---------|----------|-----|--------|---------|----------|-------|
| 책임자를 | 지정하고 | . 있습니다.(| 041-415-2012 | 2, 회원관리담당 | | | | | | | | |
| | | | | | | | | [| □ 동의 | 함 | □ 동의하7 | 다 않음 |
| | | | | | | | | | | | | |

본인은 사람과 사회를 잇는 이름다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위와같이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인 : | (인) | 또는 | 서명 |
|-------|-----|----|----|
|-------|-----|----|----|